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권력기관, 노동민생 분야 중심으로

일시 2022. 8. 18.(목) 10:00 - 12:20(1부) / 13:30 - 16:00(2부)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인사말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SESSION 1. 권력기관의 변화

사회 | 김남준 변호사 ·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발제① 검찰 편중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②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
장유식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 소장

토론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SESSION 2. 노동, 민생경제 분야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① 중소기업 정책 평가 양창영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제② 가계부채 정책 평가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발제③ 주거 정책 평가 김태근 변호사 ·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④ 노동 정책 평가 이용우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박승미 가맹거래사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 김혜진 상임활동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유선연설정부100일평가

순서

시간	내용	
10:00~10:20	사회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인사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0:20~12:20	[세션1] 권력기관의 변화 윤석열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인사와 사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사회	김남준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발제1	검찰 편중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2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토론1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토론3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13:30~16:00	[세션2] 노동, 민생경제 분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1	중소상인 정책 평가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제2	가계부채 정책 평가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발제3	주거 정책 평가 김태근 변호사,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4	노동 정책 평가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1	중소상인 정책 평가 -민생기반 현안대응과 생태계 전환 대비 구조적 전환필요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론2	온라인플랫폼, 부채 등 중소기업 정책 박승미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토론3	노동 정책 평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목 차

인사말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7p
-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9p

[SESSION 1] 권력기관의 변화

윤석열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_인사와 사정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제 1>

검찰 편중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 12p

-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 2>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 26p

- |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토론 1>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38p

<토론 2>

|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42p

<토론 3>

|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46p

[SESSION 2] 노동, 민생경제 분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발제 1>

중소상인 정책 평가 54p

|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제 2>

가계부채 정책 평가 62p

|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발제 3>

주거 정책 평가 75p

| 김태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4>

노동 정책 평가 90p

| 이용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 1>

중소상인 정책 평가

-민생기반 현안대응과 생태계 전환 대비 구조적 전환필요 110p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2>

온라인플랫폼, 부채 등 중소기업 정책 118p

| 박승미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토론 3>

노동 정책 평가 129p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인사말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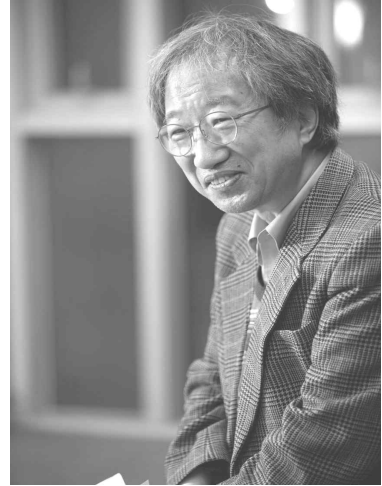
인사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에서의 국정 운영은 시민사회와 부단하게 소통하며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새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정파적으로 구성된 정책과제들을 사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고 제어함으로써 모두의 정책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또한 필수적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출범 100일을 맞게 된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및 노동 민생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그 교정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정책과정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평가 작업은 그 정책수행의 실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과 함께,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권력기관 개편이나 노동민생관련 정책은 이런 의지와는 자못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권력의 총량을 덜어내어 시민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요청은 검찰 권력을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경제의 민주화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시장경제 체제 또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추종하는 편향된 정책으로 나아가면서 경제질서에서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애초 대통령은 취임사의 상당 부분을 팬데믹 위기, 경제 위기 등의 언급으로 채우면서 위기 국가의 국면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며 의회주의의 바깥을 쳐다보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로부터 노동과 민생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시민에 의한 권력 통제의 틀을 삭제하는 일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제쳐버리고 시행령에 의한 통치로 나아가는 것 또한 그 위기의 타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의 감시와 견제 하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위기는 실효적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정치과정을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이런 가치와 지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의 평가를 위한 자리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이 추구하고 이루어나가야 할 목표를 재정립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쪼개어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주신 사회자 및 발제자, 토론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8.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어지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는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반지하 거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면서 더욱 가혹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시행령 통치]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외면한 채 위험적인 시행령 통치를 통해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 법률을 무시한 검사 수사 개시 규정 개정, 경찰국 및 인사 정보관리단 설치 등 국회 입법권 무력화를 넘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험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법률을 무력화한다면 이는 국회의 담을 탱크로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시행령이' 과거 긴급조치 보다도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측근 정치] 공과 사를 가리지 않는 잦은 인사 참사, 음주운전·갑질 논란의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임명 그리고 사퇴, 밀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자의 초대 경찰국장 임명 등은 결국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과학방역'에 부합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정치] 검찰 공화국을 통한 칼의 정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치안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경찰청장 임명과 반대로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검찰총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과거 검찰과 달리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을 대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는 과연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는 대통령의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검사의 전진 배치 및 법무부의 시행령 정치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입니다. 누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MW 정치] 100일 만의 지지율 하락, 잇따른 말실수, 아마추어적 대응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부정적 의견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선 주권자인 국

민을 무시하는 오기와 마이웨이 독선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안보 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그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등과 비판의 원인이 다른 아 닌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여론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민생 부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자영업자, 노동자들을 비 롯한 취약계층의 소득 격감, 그리고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질은 어둠은 가 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영끌 세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 대한 대책보다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등 부자 감세 등이 예고되 고 있습니다.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의 '공정과 상식'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찰과 비전]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민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지지했던 사람도 지지하 지 않았던 사람도,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도 모두 포함되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것임을 겸허 히 성찰하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민생을 향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개진할 것 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100/1826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토론회 를 통해, 우선 권력 및 사법기관, 그리고 노동·민생분야에 관한 정책 평가와 함께 향후 개혁과 제와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풍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제자, 토론자, 민변과 참여연대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 8.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SESSION 1] 권력기관의 변화

윤석열 정부의 권력시스템에 대한 평가_인사와 사정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제 1 검찰 편중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 2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

|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토론 1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2 |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토론 3 |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발제 1

검찰편중 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1. 권력기관의 변화

검찰 편중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

2022. 8. 18.

오 병 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목 차 >

- I.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중 인사
- II. 검찰 편중 인사 현황과 그 문제점
- III. 새로운 검찰공화국
- IV. 평가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

I.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중 인사

1. 윤석열 정부 100일과 검찰 관련 상황

- 기본적 입장
 - 반(反)-검찰개혁 입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 대선 공약, 국정과제: 검찰의 독립성 강조,
 - 수사권 조정, 직접수사권 배제,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등에 대한 명백한 반대 표명
- 주목되는 상황
 - 검찰 편중 인사
 - 행정기관의 책임자를 검찰 출신으로 임명
 - 검찰 수사권에 예측되는 중심 권력시스템 형성
 - 새로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 검찰 출신을 통한 주요 행정기관 장악
 - 검찰 편중인사를 통한 검찰에 대한 직할 통치체제
-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
 - 내재적 원인론과 외생적 원인론: 검찰권력 강화론 대 '검수완박'법 책임론

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개관

- 2020년의 검찰개혁3법
 - 검찰청법: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범죄로 한정
 - 6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부여
 - 공수저법: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제한적 기소권 부여
- 2020년의 통합경찰법
 - 국가수사본부 체제 도입(2021. 1. 1.)
- 2022년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 검찰청법: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2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의 수사범위 제한(별건수사 금지), 타건 압박수사 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3. 최근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윤 정부의 100일

- 윤석열 정부의 '반(反)-검찰개혁'론
 - 이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등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
 - '반(反)-검찰개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의문임.
 - 구체적인 전망과 비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체계완결적인 내용이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
- 예상된 '강경 사정 드라이브'는 언제쯤 그리고 어떤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
 - 아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의지 또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 낮은 지지율 때문? 혹은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 검찰 인사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인지?
-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와 검찰공화국 논란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2. 검찰 편중 인사: 윤석열 정부의 답변과 의문점

- 답변: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역량+적재적소'라는 주장
- 의문:
 -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 어떤 역량을 기대한 것인가?
 - 법률전문가는 행정전문가인가?
 - 전문행정 영역에 검찰 출신을 배치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9

3. 검찰 편중 인사의 쟁점(1)

- 무엇이 문제인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왜 문제인가?
 - 검찰과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검찰의 조직과 행위를 규율하는 수단
 - 역전된 논리: 왜 검찰권을 통한 법치확립을 강조하는가?
 - 검찰의 전문영역: 형사법 영역은 법치의 전체영역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범죄와 비범죄를 구별하고 범죄의 요건을 발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능력. 일반적인 행정역량과 구별됨

10

3. 검찰 편중 인사의 쟁점(2)

- 이와 같은 법치 주장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 구(舊)-검찰공화국의 발상을 그대로 가져온 것.
 - 직접 행위주체로 등장해버린 '검찰정치'의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11

3. 검찰 편중 인사의 쟁점(3)

- 무엇이 문제인가? '역량'과 '적재적소'라는 주장에 대해
- '역량'의 문제
 - 대통령과 근무 인연 등으로 연결된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이 문제인가?
 -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 서서 임용되는 것이 문제.
- '적재적소'인가의 문제
 - 검찰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을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의문.
 -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혹은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

12

Ⅲ. 새로운 검찰공화국

1. 검찰공화국의 의미(1)

- ‘검찰공화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두 가지의 언어적 관용/맥락
 - (1) 민주공화국이 검찰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 혹은
 - (2) 검찰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권력체계
 - ‘공화국(共和國)’이라는 이름은 적절한가?
 - 위 (2)의 입장에서 실체를 더 잘 묘사할 수 있다는 제안
 - ‘검찰제국’ 또는 ‘검찰왕국’이 더 맞다는 지적도 유력함.

1. 검찰공화국의 의미(2)

- '검찰공화국'이라는 가능케 하는 검찰의 조직적 특성
 - 검사동일체의 원칙: 상명하복
 - 절대적 지시, 복종 관계: 위법성이 의심되는 지시도 관철될 수 있는 조직구조와 문화
 - 검찰조직의 비민주성, 반법치성: 조직중시의 문화
 -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 등에 학습된 조직문화
 - 전관예우로 연결되는 '검찰가족'의 신화
 -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은 '전관예우' 시장에서는 약세와 무관한가?

15

2. 검찰공화국의 구성

- '검찰공화국'의 시민은 누구인가? 검찰구성원
 - 검찰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민주공화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도 가능함. 이른바 '성역'의 존재
 - 검찰'공화국'보다는 '제국'에 가까운 행태, '제국'에는 불가침 영역이 존재한다.
 - '비선논란' '본-부장 비리'
 -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무감
- '검찰공화국'의 적(敵)은 누구인가?
 - 사회정의, 부패척결을 이야기하지만,
 - 정치적으로 선택된다는 의구심(선택적 정의).

16

3. 검찰공화국의 기존 토대

- 검찰공화국의 권력의 핵심적 고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 '수사권'이 전면에 등장하고, 이를 정당화하고 귀결 짓는 것은 '기소권한'
 -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의 '수사권'에 비해 더 큰 권력적 판단이 가능하였음.
- 수사과정에서 확보되는 다양한 정보
 - 기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과정에서 정치, 경제 영역의 다양한 인적 정보의 축적
 - 파견 등을 통한 행정기관 정보 축적
- '검-언-정 네트워크': 막후의 영향력
 - 수사와 기소를 수반하여 언론, 정치권을 매개로 다양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17

4. '새로운' 검찰공화국의 등장

- '검찰정치'를 넘어 '검찰통치'의 단계
 - 검찰 편중 인사와 검찰권력의 국정 접수
- 신(新)-검찰공화국의 도래
 - 검찰 '출신' 인사들의 행정부 요직 장악
 - 행정영역에 직접적 개입
 - 검찰 '출신' 인사들과 검찰의 효과적 협력 체계
 - 행정적 사안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
 - 기존 방식의 검찰권력 확장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2022. 7. 6.) 국정원 전 국정원장 2명 고발-> 특수통 감찰관-> 서울중앙지검

18

IV. 평가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

1. 검찰 편중 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1)

- (1) 검찰이 아닌 검찰 '출신'의 행정부 장악
 - 검찰과의 관계는?
 - 더 이상 수사와 기소를 (형식적으로는) 직접 관장하지 않음.
- (2) 국가 내의 독자적인 자율 권력체계로서 검찰공화국의 지속 가능성
 - 재(再)-검찰화/반(反)-검찰개혁의 제한조건
 - 종래 검찰권력 유지 메커니즘이 한동훈 법무부의 조치들만으로 그대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 검찰권 강화를 제한하는 물리적 조건에서 '수사지휘권'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

1. 검찰 편중 인사와 '새로운' 검찰공화국(2)

- (3) 기존 '검-언-정 네트워크'의 재구성 불가피
 - 기존의 공조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이해됨.
 - '검-언-정 네트워크'는 공생관계, 혹은 이익공유관계: 상호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음.
 - 검찰이 주도권을 짊 수 있는 상황은 수사와 기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경우임.
 - '검찰-행정-언론-정치권'으로 변수가 다양화하고 그 이해관계의 접합도 경우의 수가 커진 상황
 - 검찰과 행정부 사이의 주도권 문제, 검찰 주도의 '기획수사'가 행정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 등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보임.
 - 검찰 '출신'의 행정과 검찰 자체의 노선이 분열할 가능성도 있음.

21

2. '새로운' 검찰공화국에 대한 대응 문제

- 잘못 그어진 전선: '검수완박' vs 반(反)'검수완박'
 - 사개특위의 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치 논쟁은 효과적 대응인가?
- 근본적 접근: 시민 중심의 사법이 필요하다.
 -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요청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함.
 - 수사의 효율성을 핑계로 시민참여의 확대가 제한될 수 없음.
 - '시민의 참여는 사법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혹은 '전문성이 없는 시민의 참여는 전문가들의 들러리를 설 뿐이다'는 식의 주장들.
 - '엘리트'주의 사법(전문가 사법)의 반론에 대한 대응 필요.

22

3. 검찰개혁: 전선의 재구성(1)

- 검찰개혁 논의의 개관

	검찰분권론	검찰중립화론	
기능구분론 (기능분리론)	수사권 축소론 (소위 '검수완박론') (수사지휘 불가론)	직접수사 강화론 수사-기소 분리 불가론 (수사지휘 강화론)	특수수사 중심
조직분리론	수사조직-기소조직 분리론 국가수사청 설치론 수사 협의 강화론	직접수사 축소론 수사지휘 강화론	형사부 중심

* 직접수사 강화론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그 내용으로 함.

3. 검찰개혁: 전선의 재구성(2)

- 검찰분권론
 - 검찰개혁의 필요성 : 검찰권의 비대화
 - 대안: 검찰의 분권->수사-기소의 분리
- 검찰중립화론
 -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권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
 - 대안: 검찰의 독립성->수사-기소의 일체화
 - 검찰중립화론 내부의 분화: 직접수사 강화론 vs 수사지휘 강화론
(특수수사 중심) (일반형사사건 중심)
- 윤석열 정부의 입장(검찰중립화론 중 직접수사 강화론)

4. 참여연대안: 검찰분권론 중 조직분리론

- 조직분리로서의 수사-기소의 분리
 - 수사기능과 공소제기 기능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수사를 중점적인 업무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점적인 업무로 하는 조직이 서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지 **않음**.
 - 소위 "검수완박"이란 말은 수사-기소분리의 의미를 왜곡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음**.

25

5. '탈'법치 상황 속에서 형사사법개혁

- '탈'법치(post 법치)의 상황
 - 법치를 명분으로 하는 반법치적 행태
-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대해 물어야 할 때
 - 왜 윤석열 정부는 '법치' 논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가?
 - 처벌 중심의 법치 vs 국가권력 통제를 위한 법치
 - 법치주의의 적극적 의미 vs 소극적 의미
 - '하지 못할 바 아니다(?)'는 식의 법치
 - 권력행사의 근거지움(적극적 의미)에 기댄 형사사법체계는 바람직한가?
-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야 할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의 방향
 - 실행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보다 단순한 제도 설계'
 -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제도 개선
 - 시민 참여확대: 실질적 통제권 부여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윤석열정부 17개 주요 법무검찰직책 인사현황> 별지 참고

발제 2

-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범위 확대 등

| 장유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1. 시행령 통치

법치주의(法治主義)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여야 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재판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¹⁾.

새삼스럽게 사전적 정의를 되새겨 본 것은 윤석열정부 100일이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왜곡되고 형해화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0.73%의 근소한 승리였지만,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의해 윤석열정부는 100%의 행정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숙명적으로 여소야대 국회 권력을 최소 2년 동안 상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선택은 시행령을 통한 국회 권력의 무력화 시도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의 공통된 문제점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 조직을 제멋대로 설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 100일 동안 정치(협치)는 사라지고, 행정 권력의 일방독주 그리고 이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도 방관할 수도 없다. 하루속히 법치주의²⁾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래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문제점

- 1) 다음백과 등, 독일을 발상지로 하는 법치주의는 영미법상 법의 지배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이념을 같이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치주의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지만 성문헌법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주의, 위헌법률심사제, 행정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 등을 통해 법치주의의 구성요소와 구현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 2) 윤석열정부는 법조인, 정확히 얘기하자면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다. 다시 말해 윤석열정부의 기본이념은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법치주의를 ‘법조인 또는 법률가들에 의한 통치’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법조인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지, 법조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인은 법사리 법을 악용하는 법 기술자로 전락하게 된다.

가. 사상 초유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 윤석열 정부는 종래 대통령실(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시행하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에 부여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2. 6. 7. 그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발족시켰다³⁾.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한 뒤 그 결과를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겠다고 한다.

(2)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은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할 뿐이고,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집된 정보가 사정 업무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통해 막겠다”고 밝혔다. 세간의 강한 우려에 대한 나름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는지’ 반문하게 한다. 1차 검증과 최종 검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결국은 1차 검증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됨),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지만 최종보고는 받는다는 것이고(직간접적으로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전면 후퇴하고 법무부=검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마당에 사정 공포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인사에 목을 매는 공직사회는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여러 가지 괴이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기간 대법관 14인 중 13인,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교체될 예정인데,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면서, 사전 검증까지 담당하는 사상 초유의 권한을 갖게 되므로, 법무부(검찰)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으면 대법관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우려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의 인사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어렵사리 신설한 공수처의 처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도 법무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가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나. 행정조직 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 위반

(1)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률주의와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의 행정기관 조직 및 직무 범

3) 인사검증이라는 용어 대신 ‘인사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내용 순화를 의도하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시행함에 따라 출범하였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초대 단장에는 호남·비검사(박행렬)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인사정보 1담당관 등 핵심 보직에 검사 3명이 포진되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퇴색된 지 오래라는 점,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전진 배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에서도 13명이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법무부(검찰)가 주도하고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인사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부조직법상 인사사무에 관한 권한은 인사혁신처에 있으며, 법무부의 소관 사무에는 인사사무가 아예 없다. 최소한의 위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권을 보유하고 그 담당 기관을 두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행정조직 법률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2) 2021년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헌법(96조)의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제2조 제1항)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제처는 이를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처럼 헌법상 원칙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법제처는 또 법률의 근거 없는 권한 위탁 역시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위 심사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권한을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기관의 장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법제처 2021 법령입안심사기준 483p).⁴⁾ 결론적으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바꾸는 것은 헌법 원칙 위반인 동시에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 법제처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대해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4) 참고로 기존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오던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에 의하여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아왔다. 즉,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에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상향식 위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차치하고(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이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비판한다) 위헌·위법 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자신의 권한을 법무부에 하향식으로 위탁하는 것은 법무부의 법률상 권한 범위 밖의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적정성과 위헌·위법성 여부에서 모두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다. 3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반

(1) 행정 각부의 하나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

4)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이완규이다.

(2)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6조는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두어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사무총장,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제20조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대통령령인 공직정보규정(10조의 2)에 의해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라는 규정을 명분으로 그동안 “대통령실이 국무총리나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 적정성 여부를 차치하고(이 또한 정부조직법에 규정할 법률 사안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이상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정당화되어 왔다⁵⁾. 그런데,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 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공직 검증권을 부여한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3) 법무 장관은 그 자체가 온전한 헌법기관이 아니고 그 소관 사무도 법률로 정해지는 법률상 중앙행정기관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뿐인데, 법무부가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사전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획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구성은 더욱 획일적이고 편향된 형태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사법부도 정보, 수사, 기소, 인사를 독점한 법무부(검찰)에 의해 사전 검증받고, 급기야 대법관 후보들이 검찰에 줄서기를 하는 전례 없는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다.

(4) 한편 국회의 견제 가능성에 대하여, 한동훈 법무 장관은 지난 5월 30일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인사 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발언하였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가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등 개인의 내밀한 신상정보를 다루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하여 과연 국회와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결국 국회와 언론은 정보를 독점한 법무부의 입만 하염없이 쳐다보게 될 것이다⁶⁾.

5)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은 위탁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자제했다고 한다.

6)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미국 연방수사군(FBI) 인사 검증과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나, 국가별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인사 검증 과정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의 인사 검증 주체는 백악관 인사실이며, FBI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1차 검증에 참여할 뿐이다. 백악관 인사실은 FBI는 물론 공직자 윤리국(OGE), 국세청(IRS), 의회 회계감사원(GAO) 등을 모두 동원해 자료를 찾고 검증한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FBI는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상 독립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은 FBI의 수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라. 소결

- (1) 우리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에게만 전속시키지 않고 국무총리를 포함한 행정부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분권형 집단주의를 권력구조에 심어두고 있으며, 헌법제정권자는 정부 조직에 대한 기본설계를 국회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일부개정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정보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민주 공화적 폭거라고 할 만하다(이상,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2022. 6. 10. 경향신문).
- (2)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법무부(검찰)는 수사, 기소는 물론 정보, 인사권을 독점하게 되고,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⁷⁾. 제왕적 법무부의 탄생은 어떠한 헌법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아무리 장관을 인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도(이는 말 그대로 독재 시대에 횡행했던 ‘인치(人治)’에 불과하다), 시스템적으로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이 남용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

3.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

- (1) 2022년 7월 15일, 윤석열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사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인 ‘경찰국’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등(이하, 직제개정안 등)을,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하, 지휘 규칙)을 입법예고⁸⁾한 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2) 이에 대해 경찰국 설치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30년 전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비공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밀실논의를 통해,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행정기관이 스스로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과정마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실제로도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배’이다.

나. 경찰국 설치 -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⁹⁾

- 7) 검찰과 사실상 동일체가 된 법무부는 인사 검증에서도 검찰수사에서와 같은 악습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그 악습은 ‘선택적 정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도 나올 때까지 과도한 검증을 하고, 같은 사유라도 그 무게를 후보자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8) 이들 직제개정안 등과 지휘 규칙은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입법예고의 기간(40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포함한 5일간 진행되었다.

(1) 윤석열 정부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등을 근거로 하여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중 치안, 사법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경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상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경찰청이고 다만, 경찰청의 정부 조직 구조상 그 소속이 행안부 장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청으로 설치된 경찰청과 관련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법률(경찰법)로 결정되는 것이다¹⁰⁾.

(2) 문언의 해석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조직법」 제34조는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은 “내무부장관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는 조항을 통해 치안이 현재의 행안부 장관인 당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법 제15조), 1990년 12월 27일의 법률개정에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이와 동시에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유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한 입법권자의 의지이며 개정 「정부조직법」의 취지였음이 분명하다.

(3) 나아가, 직제개정안에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경찰국은 1국 3과 전체인원 16명으로 구성되고, 경찰청 중요정책·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총괄지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등(인사지원과), 자치경찰제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자치경찰지원과) 등 업무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중 핵심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강화’가 될 것이다. 현재 「경찰공무원법」¹¹⁾과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규칙」에 의해 ‘경찰공무원인사위원

9) 이명박 정부 법제처 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이 전 처장은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건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내가 법제처장이었다면 직을 걸고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놓고, 이를 호도하는 건 국민을 알잡아보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 전 처장은 특히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과연 뭘 얻고 싶어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100번을 얘기해도 이건 위헌”이라며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을 인용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도 말했다(이상, 한국일보 인용).

10) 실제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과 유사하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부조직법」보다 명확하게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경찰청임을 확인하고 있다.

11) 경찰공무원법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경찰국 설치와 함께 경찰청(장)의 독립성이 와해되고 나면, 행안부 장관은 임용제청권을 인사권 전반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이미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그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다. 지휘 규칙 - 소관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

(1) 윤석열 정부는 지휘 규칙 제정안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소속 청에 대한 직접 지휘’ 또한 소관 사무와의 연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아니라면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부령을 제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2) 「정부조직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이어 제4항에서 “제1항..(중략)..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4항의 직접 지휘는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즉, 「정부조직법」 제7조의 제1항과 제4항을 종합하면, 행정각부의 장은 “소속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에, 중요정책의 ‘집행’이 아니라 그 ‘수립’과 관련하여 소속 외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가 「정부조직법」 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아니므로,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소속 청에 대한 장관의 직접 지휘’가 가능한 조건인 제1항의 ‘소관 사무의 통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백보를 양보하여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된 행안부 장관의 임용제청권을 근거로 이를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권한과 그 행사가 「정부조직법」 제7조의 ‘중요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은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직접 지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 요컨대, 지휘 규칙 제정안은 법률 체계상 정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무엇보다도 지휘 규칙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찰법」 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과 충돌한다¹²⁾. 「경찰법」,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승인사안 중에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든가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한다.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로 하고 있다(법 제7조·제10조, 규정 제5조). 그런데, 지휘규칙 제정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안 제2조 제1항 제1호)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과의 충돌이 필연적이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구체적으로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이루어지므로(「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 다수의 심의·의결 결과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행안부 장관이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의 체계가 무력화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모두 형해화 되게 된다.

라. 소결

(1)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설명하고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그간 이루어진 청와대에 의한 전횡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경찰국 설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와 징계, 감찰권을 쥐고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지휘한다고 해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국민에 의한 통제,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통제가 최선의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존재는 애써 외면하면서 경찰국 설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 정치권력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처럼 시행령을 통해 무리하게 기존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가. 대전제는 정치(政治)

(1) 현재의 혼란과 난맥상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치(협치)의 복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여소야대 국면을 시행령 쿠데타와 무리한 사정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시행령

통치를 포기하고 국회와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이 발제문은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보다는 약 1주일 전에 쓰이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라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기도 한다.

(3) 그런데, 이 발제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기대와는 다른 암울한 소식이 전해진다. 8월 11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보존 및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이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할 법률개정을 무력화하는 조치이다. 당초 부패·경제범죄 ‘등’이라고 하여 예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 빌미가 된 것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그 틈을 파고들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시행령을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쓴 입맛을 다질 수밖에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복원을 통한 법치주의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해보면서, 그 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나. 권한쟁의(헌재법 제61조)

(1)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다툼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헌법 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이 일차적·원칙적 관할권을 갖고, 기관소송은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충족하면 권한쟁의심판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은 ① 당사자 능력, ②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③ 청구인 권한의 침해, ④ 그 밖의 요건으로 심판의 이익 및 청구 기간의 준수가 있다. 우선 쟁점이 되는 것은 ① 당사자 능력인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¹³⁾ 전체기관으로서의 국회뿐만 아니라, 부분 기관인 국회의원(헌법 제41조 제1항) 역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¹⁴⁾ 한편, 법무부 장관 또는 행안부장관 역시 국무위원(헌법 제87조), 행정 각부의 장(헌법 제94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¹⁵⁾ 그밖에 ③ 청구인 권한

13) 헌재 1997. 7. 16. 96헌라2

14) 전체로서 국회가 당사자로 된 것은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등이 있으며, 국회의원이 당사자가 된 사건은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헌재 2007. 10. 25. 2006헌라5 등이 있다.

15) 행정 각부의 장이 당사자가 된 사건은 헌재 2007. 3. 29. 2006헌라7, 헌재 2009 5. 28. 2006헌라6 등이 있다.

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의한 청구인(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문제될 것이다.

다. 위헌소원(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제1항)

- (1)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직 정보 규정, 법무부 직제규정 등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 (2)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부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009. 10. 15. 89헌마178)”

- (3)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3. 17. 자 2020헌마365 결정)”. 하위법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이 부여한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경찰국의 경우)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을 청구인 적격요건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¹⁶⁾

라. 탄핵소추

16) 예컨대, 최근 발표된 대법관 후보 21명 중에서 누군가가 청구인이 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나 그 실현 가능성이 없고, ‘원래 인사혁신처나 다른 기관의 검증 대상인 누군가가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받게 될 경우’ 그 당사자의 청구인적격은 인정될 것이나, 일반 국민이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당초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받게 될 공직 후보자가 청구인이 되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로 인해 평등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상 인사정보관리단). 반면, 경찰국의 경우에는 현직 경찰이 청구인으로 나설 경우 적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위헌소원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인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

- (1)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¹⁷⁾
- (2)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헌법 제64조 제2항),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1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헌법은 탄핵 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경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외에 그 위반의 ‘중대성’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중 인용 의견에서도 역시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 (3) 이처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하였으나, 행정 각부의 장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국정 운영의 공백이 대통령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과 같은 가중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성’ 요건은 완화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상, 이창민 변호사,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 토론회 발표문 중).

마. 입법에 의한 대응(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

-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최근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2)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수정·변경 요청에 따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3) 국회 입법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나(과거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했던 방안), 소

17)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위 ‘검수완박’과 유사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5. 결론

시행령 통치의 폐해는 명백하다. 법치주의의 실종이다. 국회의 무력화이다. 인사정보관리단, 경찰국 설치의 법치주의를 실종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시행령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권한쟁의, 위헌소원, 탄핵소추, 해임건의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정권퇴진운동까지 거론된다. 모두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선은 정치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국회와의 협치에 나서라.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과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이제 100일 지났다. 국민들은 남은 1,600여 일을 마냥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끝.

토론 1

- 검찰주의와 법률가 정치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예상했던 대로였다. 올 4월 개정된 검찰청법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 개시 규정’으로 약칭)’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미 그에 앞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 내지는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이제 법무부의 일정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안은 8월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 검찰청법과 동시에 시행될 것이다.

대담하게도 이 규정안은 형식적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힘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행정 권력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법률의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이다.

굳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관까지 나서서 ‘개정 규정안의 어떤 부분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말해달라고 하니 한두 가지 점을 부연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는 2020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위 수사 개시 규정이 마련되었고 여기에 이른바 당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개별 구성요건들이 특정되었는데,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라는 취지와는 달리 해당 범죄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 구체적으로 예컨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는 경제범죄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은 이미 지적되었다.¹⁸⁾ 그리고 2022년의 개정법률은 이를 다시 두 가지, 즉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였으니 그 의미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더욱 좁히려는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러 법률에 흠어져 있는, 두 범죄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구성요건을 끌어모아 규정하고 싶은 듯하다. 이런 식이라면 ‘경제에 관련된 모든 범죄’가 수사 대상이라고 왜 규정하지 않는가? 요컨대 문언의 최대한 확장해석으로 법무부는 입법자가 아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위임범위의 일탈’을 넘어서서 ‘위임의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만하다.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을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2020년 개정 검찰청법에서 이 문구가 6대 범죄를 제외한 ‘그 밖의 중요범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가능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고 6

18) 서보학,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 제·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비판적 고찰과 제도적 개선 방안 -, 범죄 수사학 연구 11, 2020, 13-14면

가지의 제한적 열거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6가지 종류의 범죄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를 다시 2가지 범죄로 더욱 제한한 법률 개정에는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두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중요범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자신의 종전 해석을 부인하는 것이면서 검찰청법 개정의 맥락과 배경을 무시하는 역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또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른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관련사건’과는 달리(형사소송법 제11조 참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인적 관련을 제외한 물적 관련만을 의미하며 그것도 증거물 등이 공통되는 간접 관련은 제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안은 해당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직접 관련성이라는 제한을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련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또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법령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을 통한 경찰국의 설치에 대해서는 발표문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정부조직법 제7조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이 빠진 이유가 문제 된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1991년 경찰법의 제정과 그 배경이 된 1990년의 정부조직법 개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당시의 역사적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제정 당시의 경찰법안들은 모두 한국 현대사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이 내무부 장관과는 별도의 국무위원이 되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찰의 독립구조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1990년 이른바 ‘3당 야합’을 통해 국회 내 다수가 된 정부 여당이 그 당위가 너무나 분명한 경찰청의 독립을 부인하지는 못하면서도 그 소속을 여전히 내무부로 하는 왜곡된 형태로 변형시켜 버림으로써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의 경찰국 설치는 정확하게 이 빈틈을 파고들어 경찰을 다시 제도적으로 정부의 영향력 범위 내에 두고자 한다. 한 마디로 ‘역사적 반동’의 시도이다. 비민주적이며 퇴행적인 이 정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하나 더 말하고 싶은 법률이 있다. 2021. 1. 8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1.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률 또한 그 시행령이 적잖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전에 관한 경영책임자 등의

1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보학, 위의 글, 15-20면을 참조

의무를 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재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인데,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년 수 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는데, 법이 시행된 지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²⁰⁾ 이 시행령의 개정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내에 설치된 ‘기업 규제제도 개선 TF’는 대상 법률의 하나로 이를 지목하기도 하였다.

시행령의 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조치,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인데, 그 정도를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바꾸거나 혹은 의무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다른 편법적인 수단을 규정한다면²¹⁾, 이 역시 시행령을 통해서 모법을 무력화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2.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 법률을 넘어서려는 집권 세력의 오만 함에는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의식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검찰주의’가 있다.

한국 검찰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제도적·사실적 권력을 갖게 된 불운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자.²²⁾ 다만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권력을 키워 온 검찰이 이제 정치권력마저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큰 정치적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5년간 한국 사회는 보수와 반동의 방향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영역은 지난 70년간 주로 검찰이 중요 수사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이 축소된 만큼 국가의 부패·경제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었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자신들을 정당화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선적인 이들의 시각에는 ‘범죄 수사 = 검찰’이라는 등식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상에서는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자기들 생각만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하나의 수사기관이나 기소 기관에 불과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시행령의 개정은 2020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을 향하고 있다. 경찰국의 설치

20)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이다. 물론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21) 참고로 지난 6월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2) 한국 검찰의 탄생에 대한 일본의 영향에 관해서는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101면 이라를, 해방 이후 검찰 권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김태명, 최근 검찰개혁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 -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중심으로 -, 형사법 관련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수사·기소 분리 법제와 법치 국가적 수사 통제 방안, 2022. 5. 28, 1면 이하를 참조

까지 포함한다면 1990년 이전을 목표로 하는지도 모르겠다. 흘러간 노래처럼 과거가 이들에게는 그리울 것이다. 검사이기만 하면, 검찰의 고위 간부가 되기만 하면 공공의 적인 범죄자들을 마음껏 제압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공공의 적'인지를 자기 뜻대로 정할 수 있는 세상, 검찰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사족이지만, 이런 사회의 반동화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물론 국민의 의사에 달려있다. 이미 집권 세력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일도 되지 않을 때까지 노동을 비롯한 몇 분야에서 파열음이 들리기도 했다. 수사권이나 중대재해 문제도 커다란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사회의 진보적인 요구를 대변할 정치세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을 통한 개혁 실험은 이제 어느 정도 해 본 것은 아닐까? 적어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의지의 부족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현 정부와 다른 정치적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주체에 의해 가능한 것은 아닐까?

토론 2

- 현장 경찰이 바라본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1.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회귀

2022년 8월 2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설치되었다. 이는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여 그 대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으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된 배경과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장관의 형식적인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인 인사권으로 바꾼 것이다. 행안부 장관은 사실상 경찰청장의 상관이 되었고, 장관이 움켜쥔 인사권은 민정수석 시절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무력화되었고, 경찰청장 중심의 경찰조직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 인사도 행안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여 인사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2. 경찰국 설치는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입법 취지에도 반함.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경찰관들이었지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당연히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던 경찰관들에게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안이었나’ 31년 동안 그럼 행안부 장관들은 왜 경찰의 지휘 규칙을 만들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시작된 의문점들이 현장 경찰관들과 경찰 직장협의회를 움직이게 했고 경찰국 신설의 법적인 의문점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 시작했다.

첫째, 경찰청은 중앙 행정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보조 기관인지 여부

1. 헌법 제 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 차장, 실장,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경찰청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앙행정기관이며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은 아닌 것이다.

즉,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률주의와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직무 범위의 법정주의에 반한다.

둘째, 치안 사무가 경찰청의 독립사무인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인지 여부

1.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 16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치안, 사법경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2. 같은 법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경찰청이고 다만, 경찰청의 정부 조직 구조상 그 소속이 행안부 장관이다.

3. 같은 법 제34조 제6항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조직법」 제34조는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은 “내무부 장관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는 조항을 통해 치안이 현재의 행안부 장관인 당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법 제15조), 1990년 12월 27일의 법률개정에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이와 동시에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가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유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한 입법권자의 의지이며 개정 「정부조직법」의 취지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57조 포괄적 위임위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

경찰법 제12조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윤석열 정부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 34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의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과 충돌한다.

이로 인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행안부 장관이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의 체계가 무력화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모두 형해화되게 된다.

경찰법 제14조는 경찰청장에 관한 임명 절차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되어있다. 즉 관련법에서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갖고 있을 뿐, 추천권과 동의권은 제외시켜 놓고 있다. 그리고 경찰 고위직에 대한 추천권과 동의권은 각기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이다.

경찰조직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하도록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행안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은 수십 년간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경찰 중립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배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닌 시행령 등을 통해 임의로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어야 하나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명분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 경찰의 본질에 대한 성찰도, 경찰의 선진화를 위한 그림도 없었고 나랏일은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정당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기본도 몰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시행령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권한쟁의, 위헌소원, 탄핵소추, 해임 건의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는 정권퇴진운동까지 거론된다. 모두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고 공론화된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경찰,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직장협회의 역할 및 활동과 경찰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보장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도 과거 인권 탄압에 대한 자성과 함께 주체적, 자주적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면 좋겠다. 언뜻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력 보강 없이 할 일과 책임질 일만 늘어나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바,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경찰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할 때, 정권에 따른 경찰권 행사를 둘러싼 편향 시비를 줄이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법과 원칙, 상식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3

-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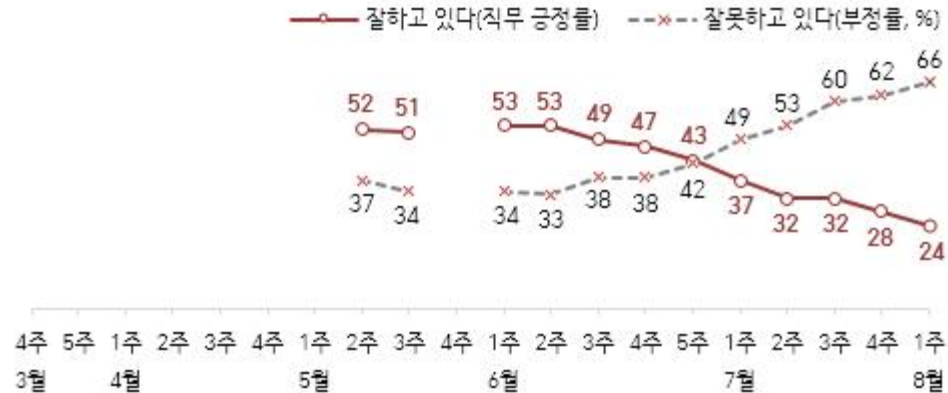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의 여론 성적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은 대개 허니문 기간으로 간주한다. 정부가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집권 초이기 때문에 또 향후 4년여 남은 임기를 고려해 좀체 꼬투리를 잡지 않고 격려한다. 이 허니문 기간에는 대체로 높은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지난 100일 내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공정과 상식'을 화두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지만 100일간 불거진 여러 국정 난맥으로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직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78.6%p, 김영삼 전 대통령은 83%p, 김대중 전 대통령이 62%p, 노무현 전 대통령이 40%p,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p, 박근혜 전 대통령은 52%p였다.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 100일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취임 초인 지난 5월 2주차(10일 취임식) 52%p 지지율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8월 첫 주 24%p로 100일간의 국정운영 지지율 최저치를 찍고 8월 둘째 주 1%p 반등해 25%p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1%p 상승이 향후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등의 여론 조사상 유의미성을 내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2년, 최근 20주



- 2022년 3월 9일 당선, 5월 10일 취임. 5월 4주(지방선거 직전) 조사 함
 - 매주 전국 성인 약 1,000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06호 www.gallup.co.kr

위의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월 5주차 긍정 43%p, 부정 42%p 소위 데드크로스를 지나 7월과 8월 꾸준히 하락했다.

특히 지난 8월 첫째 주 '24%p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지난 100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능력주의'로 국민에게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 전반을 회의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 자체를 국정운영 동력의 위험신호로 진단했다. 무엇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 평가가 낮은 것은 물론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 보수층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대구경북지역이나 70대 이상 계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높아져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둘째 주에 받은 24%p의 여론지지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긍정 평가 25%p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사태 등 특별한 사건 없이 지지율이 100일 만에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경우도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이 토론문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논의해본다.

2. 윤석열 정부 100일, 그 위기의 징후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0.73%p 표차로 신승했다. 약 24만 표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마치 전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행세했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프로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어갔다.

1) 인사 논란

우선 인사 문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를 꼽는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인사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는 초반부터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과 상식’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과거 정부는 최소 지역 안배 등 다양한 직군에서 고르게 인사하는 탕평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과 대구경북 출신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 학교, 성별 안배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능력주의’로 답했다. 지난 3월 13일 인수위 인선 1차 결과 발표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인수위에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는 것”이라며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공행상 없고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속도전 인사를 강조했다.

내각에는 유래 없이 검찰 출신이 많아 소위 검찰 공화국 논란을 낳았다. 무엇보다 언론의 검증과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전력은 도무지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한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파란을 일으킨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였다. 장관 후보자로 최초 보도가 되었을 때 기자들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단 보건 영역뿐 아니라 연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데 정 후보자 측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것이었다. ▲‘출산하면 애국자, 암 특효약은 결혼’ 등 칼럼 논란 ▲딸과 아들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논란 ▲자녀들의 장학금 논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논란 ▲"공무 출장서 골프·투어·댄스파티" 논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논란 등 온갖 논란을 낳고 결국 5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이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심각한 도덕적 결격사유가 확인돼 자진 사퇴했다. 결정타는 ‘방석집 논문심사’였다고 본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을 편법으로 허가한 의혹부터 온 가족이 한국폴브라이트 재단에서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게 알려졌을 뿐 아니라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를 감쌌다는 의혹에 제자 논문을 소위 ‘방석집’에서 심사했다는 내용까지 폭로되면서 더 이상 자리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명 7일 만에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과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한 성희롱 발언이 큰 문제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브랜드처럼 말했는데 국무위원 후보 인선 과정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에는 균열이 생겼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이어 후보 시절부터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논문표절 갑질 의혹 자녀 생기부 대필 의혹 등 무수한

논란에도 임명 강행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결국 만 5세 학제 개편안 논란으로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더 심각하다. 끊임없는 사적 채용 논란과 아마추어식 현안 대응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사적 채용 논란이 지적될 때마다 대통령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 괜찮다”는 식의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사적 채용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반응이 국민 정서를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일축했다. 과거 정치인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제기되면 곧바로 사과하고 경질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수경 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됐고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황 사장 아들, 우 사장 아들 등이 근무 중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우 사장 아들의 경우에는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그 월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의 발언으로 더욱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내부 총질’ 문자 논란으로 주목받은 인물 중 ‘강기훈’씨가 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메시지 마지막 대목에 ‘강기훈과 함께’라고 썼는데 이 강기훈이 누구냐는 논란이었다. 결국 강씨는 극우 정당 자유의 새벽당 출신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정무 실장으로 일하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옮겨갔고 권성동 직무대행 필리핀 특사단의 일원으로 동행했다.

최근에는 소위 이준석키즈로 알려진 박민영 국민의 힘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내정된 사실이 파문을 일으켰다. 박 대변인의 과거 일베 표현 전력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동생과 계정을 함께 쓰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대통령실은 “차질없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 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봉하마을에 지인을 동행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은 설치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공식행사에 나타나는 이른바 지인 논란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1호기에 탑승했던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 정책 혼선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정철학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정책 혼선이 가져다 준 폐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출근길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출근길 약식회견이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초반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정책 엇박자가 드러나고, 대통령이 오히려 기자들을 상대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도되면서 보수 패널들이나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출근길 약식회견을 변경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약식회견 형식의 소통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형식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 뿐 큰 틀에서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식회견을 통한 정부의 정책 혼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약식회견을 통해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이튿날 나서 부인하는荒唐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서서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사항을 장관이 국민들에게 브리핑했다는 것인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뿐 아니다. 8월 첫 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p대까지 추락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문제였다.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문제는 여러 정부에서 검토했으나 국민적 반발이 커서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던 정책으로 이름 높다.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박순애 장관이 사퇴했고 그 다음 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로 이 정책의 폐기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학제 개편 언급 말라”는 대통령실의 쪽지가 공개돼 또 한 번 빈축을 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제 등도 대통령실이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유의미한 검토 없이 사장됐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려면 충분한 숙의 과정과 내부 토론 후 플랜B까지 고민해서 내놓고 평가받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세칭 “아니면 말고 식”이라 국민적 신뢰를 받기 매우 어려웠다.

3)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조용한 내조”를 강조했다. 본인의 허위학력, 허위 경력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용한 행보를 하겠다고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여사의 태도는 180도 변했고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광폭 행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공식 계선을 밝지 않은 채 팬클럽 회장을 통해 B컷 공개 등 사진을 제공한 것부터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서민 행보를 했으나 NATO 정상회의 당시 입었던 의상 등 장신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개 대통령 부인들이 자국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해외명품을 착용한 점이 보수언론을 통해 공개돼 대통령 부인으로서 걸맞은 처사였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참석차 동행한 스페인행 공군 1호기에 자신의 지인을

태우는가 하면 한인마켓 앞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복장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도 의도가 무엇이나 무수한 논란을 낳았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논문표절 문제도 심각한 이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표절은 정신적 도둑질”이라며 김 여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의 논문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비교하면 2장 1절의 경우, 3~4쪽 정도가 100% 똑같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는 “박사학위 불량 검증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있다. 허위이력 등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수사팀이 전격 교체돼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왔던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서울 성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에는 이충섭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이 임명됐다. 언론에서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역린’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린이었는지 몰라도 앞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확인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과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를 겪으면서 비선 실세 농간을 직접 봤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말끔히 정리한다고 밝히고 여사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와 사적 인맥을 동원한 참여 등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 주변에서 ‘법사’ 등 윤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3. ‘용산 100일’이 남긴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위기관리센터 등 역대 정부가 시스템으로 안착시킨 대통령과 비서진의 집무 공간을 벗어나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부를 밀어내고 외교부 장관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옮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소통’ 말고는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 국민들은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바꾸는 과정에 국민적 동의와 절차는 생략됐고 체계적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추진하는 바람에 잦은 실수와 잡음이 터져 나왔다. 특히 관저와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에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인맥이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용산 시대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똑같이 매일 출퇴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경호 등의 문제로 교통 불편이 끊임없이 야기됐고, 빵집, 백화점 쇼핑, 영화관람, 연극관람 등은 서민 행보와 다르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을 방기했다는 비판까지 직면했다. 낸시 펠로시 상원의장의 방한 당시 의전 문제와 더불어 8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전화로 40분간 대화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경제, 외교 안보, 수해 피해 등 위기 관리 능력, 인사 등에서 고르게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100일을 맞이해 심기일전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을 확인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체로 현재의 수준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인데,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 홍보 분야만 논한다면 최영범 홍보수석과 김은혜 홍보특보 양대 축에서 홍보라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지 않아도 그 혼란은 예상된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혼란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된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4년 9개월이 더욱 걱정되는 오늘이다.

[SESSION 2] 노동, 민생경제 분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발제 1> 중소기업 정책 평가

|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제 2> 가계부채 정책 평가

|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발제 3> 주거 정책 평가

| 김태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4> 노동 정책 평가

| 이용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 1> 중소기업 정책 평가

민생기반 현안대응과 생태계 전환 대비 구조적 전환필요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2> 온라인플랫폼, 부채 등 중소기업 정책

| 박승미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토론 3> 노동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1

중소상인 정책 평가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I. 머리말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²³⁾ 정책을 독립된 영역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지난 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소상공인 공약은 줄을 이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과거에도 소상공인 정책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정책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에 이른 시점에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가늠해 보는 것은 현재 소상공인의 상황이 코로나19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달성도나 효과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상공인 정책의 내용을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확대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100일간 소상공인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윤석열 정부 100일 소상공인 정책

1.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소상공인 정책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부 과제 중에는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도소매업, 음식료 판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도 있으나 소상공인 정책 과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두 포함하여 살펴본다.

23)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부르고 있고 중형 규모의 사업자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용어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편의상 소상공인이라고 칭한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 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전환) 전담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2)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 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 업체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 시정
- (납품단가 제값 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 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

(3)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 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 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 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4)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 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 분쟁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기술 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 요구권 신설
 -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 유용행위 제재 강화
- (신동반 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 회수 가능한 상생 결제 활성화

2.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2022. 05. 11. 당정 합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370만 곳에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여행·공연 등 ‘사각지대’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1분기부터 손실 보상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

(2) 2022. 05. 13. 비상경제대응 TF 2차 회의

-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및 민생 물가 안정 등 사업 구성 논의

(3) 2022. 05. 30 중소기업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 손실보전금 :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23조원 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 → 100%), 하한액 인상(50 → 100만원), 대상 확대(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재원 보강 1.6조원
- 금융지원으로 신규 특례보증·대환대출 등 12.9조원 규모 공급

(4) 2022. 0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에 8조원 지급

(5) 2022. 06. 03. 동네 단위 소상공인 중심 유통 생태계 마련

- '22년 동네 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6.2~6.27)

(6) 2022. 06. 03. 점포수, 매출액, 유동 인구 변화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상권정보를 제공해 온 '상권정보시스템' 개편

(7) 2022. 06. 03.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 30.부터 신청 및 지급

(8) 2022. 06. 08.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 9.부터 신청 시작, 신청과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9) 2022. 06. 08.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

(10) 2022. 06. 09. '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11) 2022. 06. 09. '22년 장수 소상공인 롤모형(모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차 선정

(12) 2022. 0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1」6개월 연장(~'22.12월)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수준) 0.2조원을 소진기
금 용자(금리 4~7% 수준)로 전환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 추진(42조원 규모)
- (플랫폼 경제) 민간주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
성하여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 마련.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마련

(13) 2022. 06. 28.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14) 2022. 06. 30.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 '가치샵시다 플랫폼' 새롭게 출발

(15) 2022. 07. 06. 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

(16) 2022. 07. 14.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
표

-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계획 논의 : 자영업자·소
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
화, 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17) 2022. 07. 22.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후속 조치 관련 금융당국-금융권 만기연장·상환
유예 연락처 협의

(18) 2022. 07. 25. 2022. 07. 22.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후속 조치 관련 금융당국-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락처 협의

- 2년간 41.2조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유동성 10.5조 원 - 대출7.2조 원, 보증
3.3조 원 / 경쟁력 강화 29.7조 원 - 대출 18.3조 원, 보증 11.4조 원 / 재기지원 1조
원 - 대출 0.5조 원, 보증 0.5조 원)

(19) 2022. 07. 28.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2년 상반기 신
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 2022. 07. 29. 금융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첫 회동 -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다짐

(21) 2022. 07. 29.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22) 2022. 08. 02.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노력 다짐

3. 끝나지 않은 hefning,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폐지

윤석열 정부는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정책화하겠다고 하면서 2022. 7. 21.부터 국민제안 투표를 시작하였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10건의 국민제안을 대상으로 상위 3건을 뽑는 온라인 투표였는데, 10가지 제안 후보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되었다. 후보 제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비실명 투표가 가능한데다가 국민이 아니어도 투표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과 분열만 키우고 결국 hefning으로 끝났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보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안 후보로 선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언제든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III. 윤석열 정부 100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

1. 손실보상 및 채무조정 정책과 한계

지난 100일 소상공인 정책 중 코로나19 시기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정책이 눈에 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출범 초기 '손실보전금'으로 23조 원을 지급하고 보상 보정율과 지급하한액 상향 및 지급 대상 확대하여 보상금액과 범위를 늘린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업시간제한 대상이 아닌 일부 업종을 보상범위에 포함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과거에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해 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급 적용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손실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지원금을 대신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입은 손해에는 미치지 못한 손해보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거나 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정책은 아직 실질적 정책이라고 할 만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마

나 상환유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증폭되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2017년 549조 원, 2018년 624조 원, 2019년 684조 원 수준이었고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약 803조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수치다. 2021년에도 전체 부채 규모는 약 9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자연스럽게 부채 증가와도 직접 관련이 있고 손실보상이 부족한 만큼 부채도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일수록 부채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2020년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 30%)는 전년 대비 22.32%, 중소득 자영업자(소득 30~70%)는 25.51% 부채가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고소득 자영업자(상위 30%)는 14.76% 증가에 그쳤다. 2021년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였는데, 저소득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7.32%, 중소득 자영업자는 14.4%, 고소득 자영업자는 12.22% 빛이 늘었다²⁴⁾.

한편,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 원을 투입해 대출을 장기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최대 3년까지 이자만 내도록 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상환하도록 하는데도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와 함께 8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이자가 연 7%를 넘는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논란 극복과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2. 민간 주도와 자율규제 정책 방향과 한계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성장에 있어서 '민간 주도', 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민간 주로나 자율규제는 소상공인 정책 방향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 업종과 생계형 적합 업종,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조정,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단체를 결성해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대한 제한 등을 보더라도 민간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제도들이다.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데 여기에 정부의 조정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을 우선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원 정책만으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과거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다.

24) 시사인 2022. 8. 5. '데이터가 증언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빛' 인용

민간 주도 또는 자율규제의 한계를 매우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속성을 기하겠다고 정부는 제시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은 사후적 문제 해결 방안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와 자체적 혁신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으로 실질적 내용은 손실보상과 부채문제로 좁혀볼 수 있다. 다른 정책들은 엄밀히 보면 종전에 해왔던 정책들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장기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일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성질이 강하다. 부채 문제도 장기간 도외시한 문제가 코로나19 시기에 가시화하였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위험신호에 따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두 정책은 모두 문제에 대한 대응책 또는 대책으로 볼 것이지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한계가 바로 사안에 대한 대응책에 불과한 것을 정책으로 대신한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안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정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끝.

발제 2

가계부채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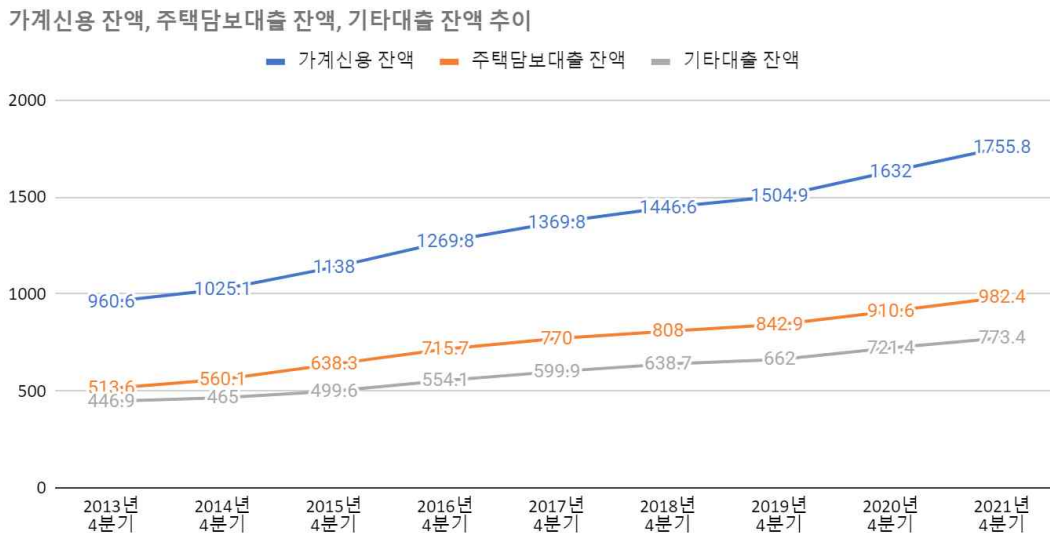
- 고비를 넘기고 싶어할 뿐, 관점은 부재하다

| 신동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1. 윤 정부 이전의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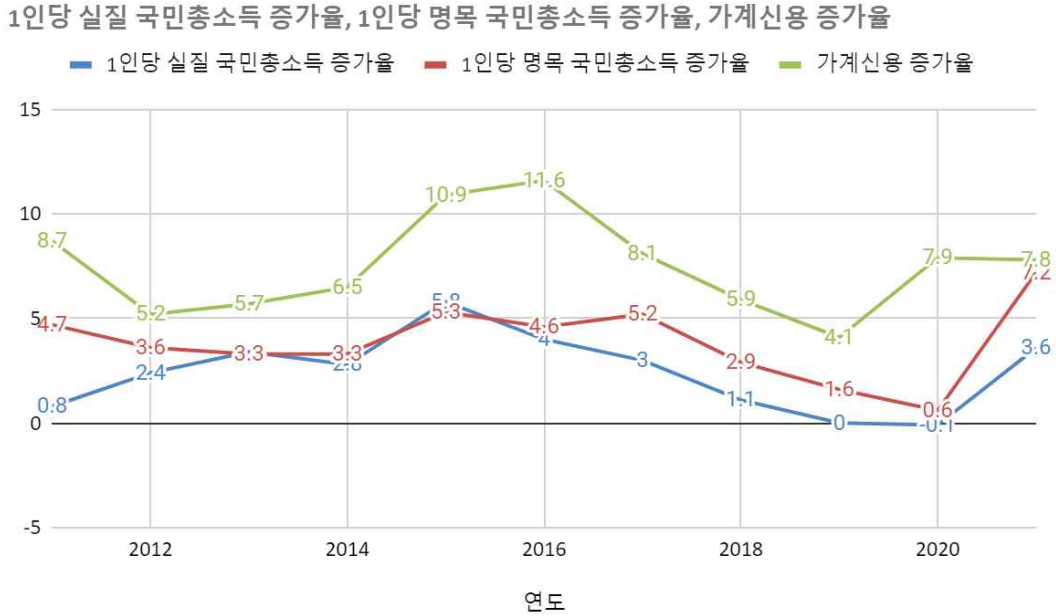
- 1)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한국은행이 밝힌 바 올해 1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0조 원(판매신용을 제외하면 1,753조 원)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2013년도) 가계신용 잔액 960조 원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이며, 동시기 주택담보대출은 514조 원에서 982조 원으로 약 1.9배 증가함.
 - 지난해 문 정부의 2차례에 걸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 외에는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그 증가 수준이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 2011년~2020년 가계신용은 매년 평균 7.5% 증가한 반면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2.4%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1> 가계신용 전체,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잔액 추이



*출처: 한국은행

<그림2> 1인당 실질·명목국민총소득과 가계신용 증가율 비교



*출처: 한국은행

- 그에 따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2022년 1분기 기준 104.3%),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2020년 기준 200.7%)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왔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비율 증가세를 억제하거나, 부채 잔액 자체를 축소해온 것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표1> OECD 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2~2020 증감(%p)	2017~2020 증감(%p)
한국	153.9	154.9	158.0	162.3	174.5	181.8	185.0	188.2	200.7	46.8	18.9
평균	121.3	120.1	119.9	119.0	118.7	119.1	118.9	120.1	125.4	4.1	6.3

*출처: OECD(Household debt Total, % of net disposable income, 2020 or latest available) 소속 35개 국가에 대한 통계를 재가공함. 2020년 통계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는 가장 최근 연도의 데이터로 증감(%p) 정도를 확인.

- 2021년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시행 이전의 가계부채 규제 방식은 규제지역 지정(zoning) 후 특정 가격(9억 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주택가격 풍선효과와 뒷북 행정의 가계부채 급증과 함께 나타난 경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²⁵⁾

25) 참여연대, 2020.8.1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금융의 기본을 지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 현행 개인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²⁶⁾ 규제가 시행 중이나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금융 등 대출이 연간 상환 원리금에 계산되지 않고, 한국의 독특한 전세(보증금부 임대차)제도에 따른 보증금이 깎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규모가 850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발표된 바 있음²⁷⁾.
-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가계부채 상황과 함께 고금리 흐름에서 70~80%에 이르는 변동 대출 비율,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 채무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2)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영업자 부채 급증이 주요한 금융 리스크로 부상함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영업금지·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 부실한 손실보상, 피해지원 등으로 말미암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함.
-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했고 특히 2018년도에는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1년 못지않게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기도 했음²⁸⁾. 그러나 2019년에 다소 감소했던 자영업자 부채 잔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던 것은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것임.

<그림3> 코로나19 유행 직후 수도권 자영업자의 매출감소율(2019년 → 2020년)

업종	매출 증감률	업종	매출 증감률	업종	매출 증감률
가전제품 판매점	13%	농수축산물점	-25%	양식당	23%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판매점	3%	의류/신발/가방 판매점	-28%	베이커리/제과점	-4%
인테리어/조명용품점	-6%	휴대전화 판매점	-30%	한식당	-14%
주유소, 충전소	-13%	인쇄	-34%	패스트푸드점	-15%
운동/경기용품 판매점	-13%	반찬가게	-36%	중식당	-20%
반려동물용품 판매점	-14%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판매점	-40%	분식집	-26%
가구/중고가구 판매점	-15%	약국	-40%	커피전문점	-28%
차량/모터사이클 부품 판매점	-15%	화장품/미용재료 판매점	-41%	치킨/피자전문점	-29%
슈퍼마켓	-16%	안경점	-42%	일식당	-39%
편의점	-17%	생활용품 판매	-43%	호프/주점	-42%
서점	-18%	시계 및 귀금속 판매점	-50%	기타	-17%
철물점	-21%	문방구	-70%	요식업 전체	-21.4%
식품/첨가물 도소매	-23%	기타	-17%		
의료기기 판매점	-23%				
기념물/판촉물 도소매	-24%	도소매업 전체	-20%		

26) 연간 상환원리금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써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규제 방식임.

27) 중앙일보, 2021.12.2., 숨은 가계부채 850조…전월세 보증금 합치면 GDP 89%→133%

28) 한국은행에서는 그 이유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창업 증가(60대 이상 차주 비중 상승) 등을 꼽은 바 있음.(한국은행, 2018.9., 「금융안정 상황」)

업종	매출 증감률	업종	매출 증감률
건축사사무소	9%	당구장	-43%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점	-5%	네일숍	-44%
전문서비스업 ²⁾	-9%	필라테스/요가원	-44%
한의원	-13%	목욕탕	-50%
골프연습장	-13%	외국어학원	-52%
부동산 중개업	-15%	광고 대행	-53%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등	-18%	피부관리실	-54%
세탁소	-28%	산후조리원	-60%
건물 청소/미화 업체	-29%	노래방	-64%
예체능계학원	-30%	일반의원	-66%
가전제품/통신기기 수리점	-33%	사진관/스튜디오	-66.9%
이미용실	-34%	여행사	-68%
PC방	-39%	공연/행사 대행	-81%
일반 교습학원	-40%	기타	-27%
헬스장	-42%	총합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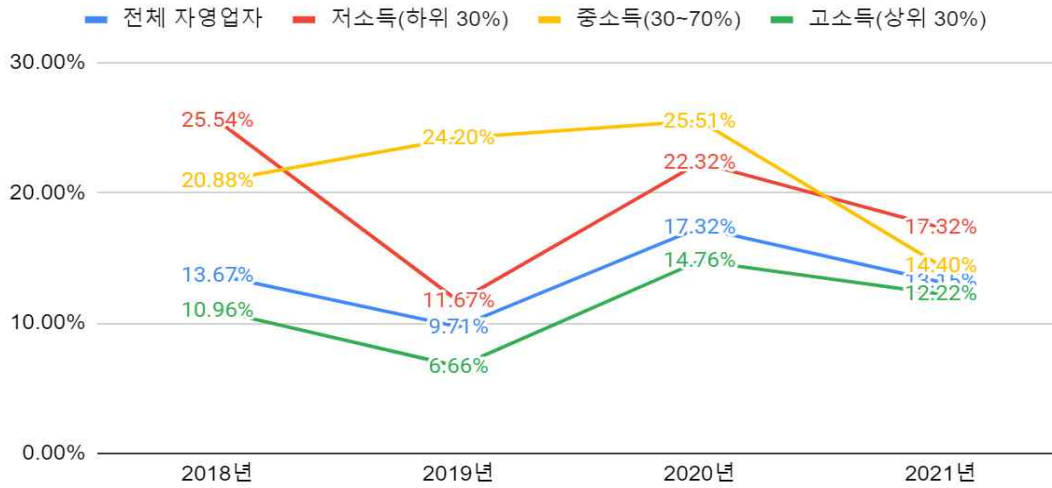
출처: 박정미·오상엽, 2021.12.17., KB금융 경영연구소

-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부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양적인 팽창에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 자영업자 총 대출 중 다중채무의 비중이 약 60%에 이르고, 전체 자영업자 다섯 명 중 1명(23%)은 다중채무자에 해당.²⁹⁾ 가계부채 일반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대출 증가율이 고소득 자영업 가구에 비해 높으며, 증가율 수치로도 2020년 22.3%, 2021년 17.3%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일반의 증가율(7.9~7.8%) 2~3배 가량 상회함.³⁰⁾

29) 한국경제, 2021.6.14., 500조 '다중채무의 늪'...빚으로 빚 둘러막는 자영업자 126만명

30) 참여연대, 2022.7.22.,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림4> 2018년~2021년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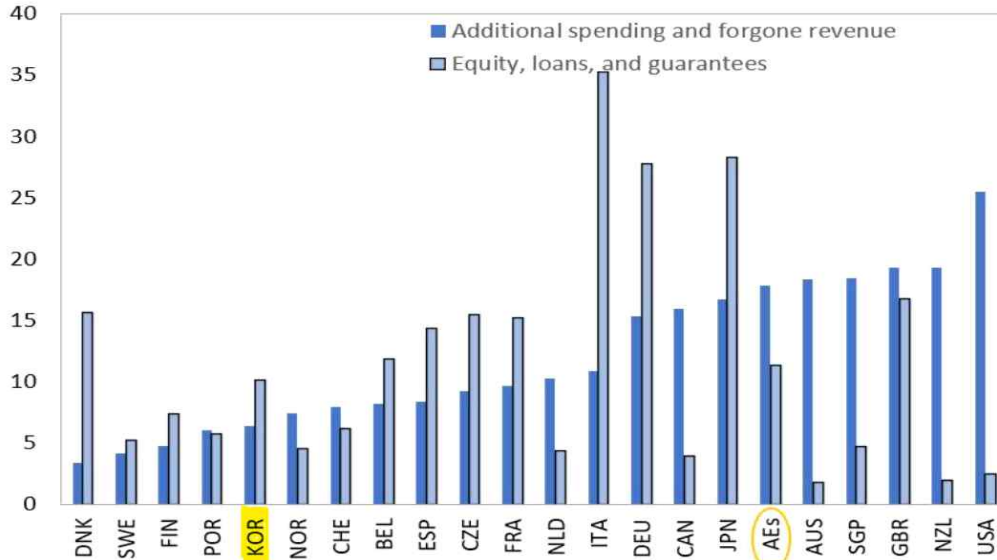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장혜영 국회의원

-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1월~2021년 9월 주요 선진국들(Advanced Economics)이 코로나19 대응해 집행한 재량적 재정·회계 조치들을 살펴보면 재정적 지원(Above the line: 추가 재정지출, 세금 감면)은 GDP 약 18%, 자산·자금 대여 및 보증 지원 등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규모는 GDP 대비 약 1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나, 한국의 경우 약 GDP 대비 재정적 지원이 약 6.4%, 유동성 지원이 약 10.1%으로 확인됨.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GDP 대비 전체 지원 비율이 낮으며, 지원방식도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나 세금 지원보다는 자금 대여나 보증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채 상승의 원인이 됨.

<그림4> 2020년 1월~2021년 9월 주요 선진국(Advanced Economics)의 코로나19 대응 재정·회계 조치 현황 (2020년 GDP 대비 %)

Discretionary Fiscal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in Selected Economies
(Percent of 2020 GDP)

ADVANCED ECONOMIES



출처: IMF Database W

- 당장 올해 9월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해제될 경우 약 140조 원(2022년 1월 기준)을 상회하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³¹⁾ 특히 매출 급감과 잇따른 대출로 신용도가 떨어진 차주들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 상황이었음.

<표2> 2017년~2021년 은행/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연도	전체 잔액	비은행권 대출 비중	은행권 대출		비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	잔액	증가율
2017	549.2	30.6%	380.9	9.7%	168.3	26.6%
2018	624.3	31.4%	428.4	12.5%	195.9	16.4%
2019	684.9	32.2%	464.7	8.5%	220.2	12.4%
2020	803.5	33.5%	534.1	14.9%	269.4	22.3%
2021	909.2	35.5%	586.3	9.8%	322.9	19.9%

*출처: 장혜영 국회의원, 한국은행

31) 한국은행, 2022.6., 「2022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2. 가계부채 관련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국정과제

1) 코로나19 신용팽창에 대한 한시적 대응과 ‘빛내서 집사라’식 패러다임에 갇힌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과 국정과제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정부는 내세운 공약은 (1)코로나19 경제위기를 부채를 동원해 버티었던 경제주체들, 특히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한시적 대책과 (2)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완화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외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관련 공약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이러한 기초는 새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답습되었음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

(1)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한시적 대책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폭을 현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현캠코의 2조 채권매입 사업 규모 5배 이상 확대), ▲ 부실이 전면 발생으로 악화되면 외환위기 시절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50조 이상 재정자금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 5조 원 이상 특례보증 통해 저리 대출 자금 확대, ▲ 코로나19 피해자에게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만기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지원)

(2) 서민·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분적인 대출 규제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인상, ▲ 생애 최초주택 가구가 아닌 경우 LTV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 차등화,

※ 비상식적이고 약탈적인 대출에 따른 당국의 조사·제재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우선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50%였던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 가구 LTV를 지역 무관 70%로 단일화, 다주택자의 LTV도 기존의 0% → 30~40%로 완화,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등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하고, 담보·보증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하겠으며, 대한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등 채무조정·금융 공급 방안을 발표함.

2)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 주택금융 레버리지 한도 확대

- 금융위는 대출한도 최대 6억 원 내에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지역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 → 2년으로 완화했으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택담보 대출 한도도 기존의 1억 원→1.5억 원으로 확대함.

<표3>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제도개선 전후 비교

요건	현행	개선	
	생애최초 + 생초 외 무주택 (연령제한x)	생애최초 (연령제한x)	생초 외 (연령제한x)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 이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	제한없음	현행유지
소득 (부부합산)	1억원(생초) 미만 0.9억원(일반 무주택자) 이하	제한없음	0.9억원
LTV	60%(~6억원)·50%(6~9억원)[투기·투기과열] 70%(~5억원)·60%(5~8억원)[조정대상지역] 70%[기타지역]	80%	현행유지
DTI	60% 이하	현행유지	현행유지
DSR	40%[총대출 1억원 초과시, 2금융권 50%] 이하	현행유지	현행유지
대출한도	4억원	6억원	4억원

*출처: 금융위원회, 2022.6.16.

-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DSR 산정 시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가이드 라인을 개선하고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 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하기로 발표함(금융위, 2022.6.16.) 그에 따라 20대 초반 51.6% 30대 초반 17.7%로 DSR을 현재 소득 대비 높게 산정할 수 있게 함.

< 대출한도 확대 사례 >

- ◇ (사례1)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
(연리 3.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17.7%)
 - 현재소득 : 연 3,600만원 / 장래소득 : 4,237만원(= 3,600 × (1+0.177))※만기 20년 적용
 - 대출한도 : 2억 6,723만원 → 최대 3억 1,452만원 (+17.7%)
- ◇ (사례2)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
(연리 3.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51.6%)
 - 현재소득 : 연 3,000만원 / 장래소득 : 4,548만원(= 3,000 × (1+0.516))
 - 대출한도 : 2억 2,269만원 → 최대 3억 3,760만원 (+51.6%)

*출처: 금융위원회, 2022.6.16.

2)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 취약차주의 당면한 상환압박 완화를 위한 방안

- 금융위는 2022.6.16.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발표했음. 규모로는 2022~23년 2년간 최대 40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고(주택금융공사 출자 1090억원), 대상은 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5억 원(주택시가 4억 원 이하). 9월 중 시행 예정임.
- 30조 원 규모(캠코 출자 3.6조 원)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해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 등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 8.7조 원(신용보증재단 출연 0.68조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 9월 말
-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거나(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정상적 경영활동을 지속 중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의 사업 목적으로 실행된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22조 원)에 대해 8.5조 원 규모로 대환 보증 공급 예정. 9월 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 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인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3.25%로 적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예년도의 8조 원 수준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를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대응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와 암행·일제 단속 강화하기로 함.

3. 평가 / 결론

1)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정책 평가

- 코로나19 이후 부채위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외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및 상시적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 부재

- 비록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조정되는 시점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라는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지난 정부 동안 끊임없이 증가해온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으며, 금융배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 사금융에 대한 대안, 과잉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제도개선 사항 역시 전무함.
- 서민, 청년층 주거 마련을 구실로 진행된 LTV규제완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조

정, 금리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악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효성도 낮고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도 컸지만, 대출을 동원해 주택 구입을 꿈꾸는 대중의 욕망에 편승한 점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이므로 정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할 만한 사항으로 보임.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책정되는 DSR 규제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지역 고가의 주택을 대출을 동원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서민·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지지해주기 위한 정책인지 혹은 중상층 이상의 정권 지지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필요한 지점임.

- 변동금리 취약차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고금리 대출로 상환압박을 받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은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함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유의미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빛내서 집사라’, ‘빛내서 견뎌라’식 구조의 변화 없이는 단기적 대중적 조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를 떠안을 배드뱅크로 새출발기금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발표하고 있음.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채무조정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임. 정부는 새출발기금이 30조 원 규모로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원은 불과 3.6조 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기금 재원의 약 90%는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 운영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금융사들은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율을 인하를 저지하고 부실채권 매입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³²⁾. 또한, 캠코가 경직된 채무조정 및 과잉 추심으로, 부실 채권 적기 상각처리 및 채무감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이 있어 왔었고³³⁾ 과거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을 통해 상환 실적을 챙기려 하고, 기금에 출자한 은행들에게 이익을 남겨 ‘채권추심 대리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음을 감안한다면 기우가 아님. 그러나 금융사들은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지난 2년 동안 정부 정책에 따른 신용팽창에 따른 과실을 얻었기 때문에 부실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기금의 운용이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기한이익 상실과 일시 상환 압박으로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도 기금운용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제언

(1) 당면한 부실 위험에 대한 즉흥적 대응 외 가계부채 정책·제도 개선방안 부재

- 가계부채의 발생-보유-청산에 이르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됨

32) 오마이뉴스, 2022.8.8., “”도덕적 해의?“ 금융위원장이 열변 툴한 이유”

한겨레, 2022.8.7., “‘새출발기금’ 불만 제기하는 은행들...이면엔 ‘은행 손실’ 우려”

33) 이와 관련해 필자는 주빌리은행으로부터 공유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NPL채권에 대한 제언」등 자료를 통해 캠코의 추심인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경매를 운운하며 과잉추심에 나서고, 캠코가 소액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에 소극적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부동의하는 등 사례를 확인한 바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국정과제와 정책 사항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한 부분은 가계 부채를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고금리, 경제위기, 채무부실 위험 등 당면한 현실을 뚝질하는 것에 급급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음. 당면한 위기를 해소함에 있어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즉시 조치 이후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채무자 보호 등에 있어서 정책적 입장이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당장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에 대한 이자감면, 대환대출, 배드뱅크 외에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정비, 과잉·약탈적 대출 방지, 채무자의 고통 분담과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존 제도 개선 등 방향성은 찾아볼 수 없음.

(1) 채무 발생 및 보유 단계에서의 정책/제도적 과제

- 지난 정부 가계부채 급증은 물론 그간 조세, 사회복지, 주거, 노동 정책 등이 국민의 연대 의식을 저하하고 공공성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 개인 대다수의 불안 야기에 따라 투기 심리를 자극했던 것에 근본적으로 기인한 것이나, 정부의 금융정책 역시 무분별한 대출 동원을 방조해 이를 저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부족했음에 있음.
- 비록 지난 정부가 이에 뒤늦게 대처하긴 했으나 개인 차주별 DSR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두 차례 발표해 시행했고, 해당 정책이 최근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DSR 산식에서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과 전월세보증금까지 포함해 DSR 규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 과잉 대출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정부 역시 가계 부채가 최소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량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채무 발생 단계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고리대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정 최고금리를 과도하게(2배) 초과하는 대출이나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의무까지도 무효화하는 방안이나, 이자가 누적되어도 원금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신용 서민들이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리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금융공급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 비율 증가에서 보듯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 대한 불공정 채권추심을 막고 채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차츰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함. 현재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채무자 대리인 규정을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 모든 채권 추심인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고, 채무 대리 변제 요구 등 무리한 추심행위를 제한해야 함.

(2) 채무청산 단계에서의 정책/제도적 과제

- 새출발기금 출범에 앞서 캠프의 추심행위가 취약 채무자의 삶을 압박하고 문제점을 짚어야 하며, 1,000만 원 이하 10년 소멸 시효 임박한 채무를 소각해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와 추심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의 정책적 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한계채주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채무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법원(도산부), 중기부나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 유관부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채무상담과 분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을 수행. 창업·전업, 복지 지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함. 채무조정 이전에 취약채주의 재생 가능성, 합리적인 채무조정 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가 사전 판단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공적 기관의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³⁴⁾³⁵⁾
- 행정적 차원에서의 일괄적인 채무조정 외에도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 청산도 요구됨. 그러나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지방 법원간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성, 채무자 우호적 결정의 수준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향 평준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는 회생법원을 전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함.
- 지난 2년간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했고, 향후 이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당면한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개인회생 과정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산정 및 공제 등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방식이 고민되어야 함.
- 현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개인파산의 장애물이 되는 파산자에 대한 자격 차별을 (최소한 면책된 채무자에 한해서는) 철폐하고, 이들에 대한 신용 제한 역시 완화해야 함. 끝.

34) 박정만, 2022.4.2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악성채무해결 방안」, 『코로나로 진 빛,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이동주 국회의원실

35) 김경민, 2022.3.30,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중소기업포커스 제22-05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참고

< 과잉 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주요 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등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이용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금융회사 등이 금융이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되, 대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금융회사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용 정보를 활용하여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산출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 체결을 금지함(안 제2조제3호, 제5조, 제6조).

라. 금융이용자는 변제능력의 악화, 금융시장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 등에 대출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 담보 자산을 부풀리거나 상환조건 등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일정 시점 이후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는 대출을 체결하는 행위, 대출거래 관련 분쟁 시 강제 중재조항 설정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외 연대보증 요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 불공정대출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금융이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근거를 명시함(안 제12조, 제13조)

발제 3

- 주거 정책 평가

| 김태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1. 국정과제

1)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 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3)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2. 정책 발표

2022. 06. 14. 경제부총리,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개최

2022. 0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공공임대주택) 생활 SOC 결합, 노후공공임대 효율적 정비 등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 마련('22.3/4)
-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100% ⇒ 60%, 종부세 산정시 지방세가 주택도 1주택에서 제외, 양도소득세도 1년간 중과 배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상 주택에도 생애최초 LTV 상한 80% 완화 등 LTV·DSR 대출 규제 완화 등

2022. 06. 21.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등 논의
- ▲ 정비 사업비 관련 항목 추가, ▲ 건설 자재값 상승분 건설비에 반영, ▲ 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감정평가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의 검증 참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등

2022. 06. 23. 원희룡 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2022. 06. 27.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 조치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 실시

2022. 06. 29.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민간 혁신위원 중심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 라인 등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
-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 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

2022. 07. 15.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시행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

2022. 07. 18.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통합심의회」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저금리·고정금리로의 전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2022. 07. 20.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보고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 동결,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1년 한시 확대,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히 확대, 민간과 협력하여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 입지·품질 등 공공주택 질적 개선도 추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022. 07. 21.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 ①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금액에 따른 세율 기준으로 통일)
- ② 종합부동산세 세율 0.5% ~ 2.7%로 하향
- ③ 세부담 상한 : 150%로 단일화
- ④ 일반공제금액 : 9억 원으로 상향
- 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 12억 원으로 상향

2022. 07. 24.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

- ① (민간공급 활성화)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 ② (도심·역세권 공급)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
- ③ (사업속도 제고)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 ④ (정주여건 개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 및 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 구축
- ⑤ (내집마련 지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

2022. 07. 26.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 07. 27.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 전문기관 연구용역

3. 주요 현황

가. 주택 수요 측면

- 1) 인구(세대 분화)와 소득 추이 - 2020년 인구 감소 시작

연도	1960년	1972년	2002년	2022년
인구	108만명	95만명	49만명	25만명 이하 추정

- 2) 수도권 일자리 집중도 - 지구촌 유일한 수도권 인구 집중율 50%
- 3) 교육 집중도 - IN서울에 집중되는 서열과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
- 4) 의료와 교통 및 문화 시설 등의 편의 - 서울 집중

나. 주택 공급

- 1) 분양주택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 2) 임대주택 - 가) 민간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주택, 다) 사회주택

다. 주택 금융(금리와 대출)

- 1) 미국 2022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 돌입
- 2)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청년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 대출 늘리는 중

라. 주택 임대차 정책

- 1) 2022년 8월 전세 시장 안정화 경향
-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의 향방은?

마. 주택 조세

-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최대 50%) 감세 정책 시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구분	현행	개정
일반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 '22년 한시적으로 11억원에 대하여 3억원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 표준	현행		개정
	일반	다주택	
3억원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6%	3.6%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초과	3.0%	6.0%	2.7%

* 법안: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월세율
→ (개정안) 2.7% 단월세율

기획재정부

4. 주거 정책 평가

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대책 - 8월 9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연기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완화 방안에 국한하여 평가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2017. 2. 3.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인용)의 내용

2) 예상되는 정부의 대책

- ① 개시 시점을 늦추어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법
- ②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법
- ③ 누진 부과 기준을 증액하는 방법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text{부담금} = \left\{ \text{종료시점 주택가액} - \left(\text{개시시점 주택가액} + \text{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text{개발 비용} \right) \right\} \times \text{부과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금액 산정 방식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조합원 수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200만원×조합원 수+5,000만원 초과금액의 20%×조합원 수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	600만원×조합원 수+7,000만원 초과금액의 30%×조합원 수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	1,200만원×조합원 수+9,000만원 초과금액의 40%×조합원 수
1억1,000만원 초과	2,000만원×조합원 수+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조합원 수

주요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 시뮬레이션

(단위=만원)

구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대치쌍용2차	잠실주공5단지
주택가격 준공일(A)	444,469	211,177	205,781
주택가격 부과개시 시점(B)	138,870	73,046	80,664
개발비(C)	71,770	54,945	38,168
정상주택가격상승분(D)	38,842	12,936	22,562
초과이익(A-B-C-D)	194,986	70,249	64,388
부담금	93,993	31,624	28,694

※ 주택가격은 조합원 1인당 보유 가치의 총액, 준공시점의 가격은 예측치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완공 시점의 아파트 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때 아파트 가격, 건축비, 주변 시세 상승분(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뺀 차액에 부과된다. 환수금 부과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 종료시점은 준공일이며 부과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역산해 부과개시시점을 산정한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대치쌍용2차, 잠실주공5단지 등 현재 조합설립인가 상태인 단지들은 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 전후로 준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던 2012년이 초과이익환수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적용돼 이익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다.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2012년 조합원 1인당 주택가격은 13억8870만원(공시 가격 기준)이었고, 2022년 준공 후 조합원 1인이 가지게 되는 보유가치의 총액은 약 44억4469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뮬레이션에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에 최근 1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준공 당시 예상 시세를 추정했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의 보유가치 상승폭이 다른 단지들보다 월등히 큰 것은 재건축 사업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단지는 6층 이하 저층 아파트로 기존 2090가구가 재건축 사업 후에는 최고 35층, 5518가구로 늘어나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19. 12. 27.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수단의 적합성 심사부분에서 언급)

살피건대, 주택재건축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격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의 속성이 강해,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값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의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은 경관 악화와 기반 시설 부족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자재를

철거하여 다시 시공함에 따라 다량의 건축폐기물 양산과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개발이익은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이익은 상당부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을 증가 즉, 개발밀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한 밀도차익 내지 해당 토지의 활용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략...)

4) 평가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얻는 상당한 개발이익은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을 증가로 인해 얻어지는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범위를 최대한 늘려주겠다는 방안인데,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부동산 투기라고 함.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음

나. 금리 정상화로 인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추이에 반하는 주택임대차 정책 추진

1)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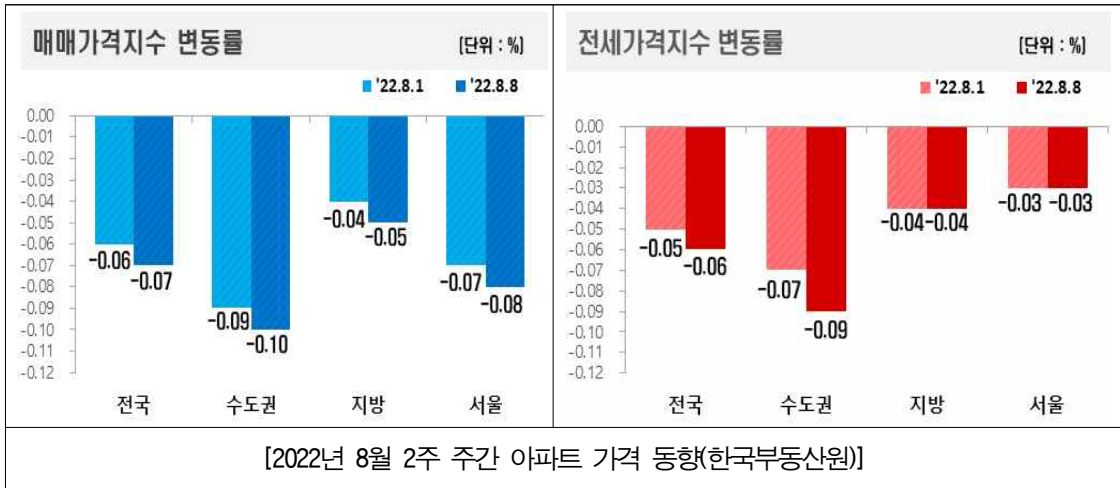
- 최근 집값과 전세값 급등은 2020년 3월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저금리의 영향이 지대하였음.
- 그 후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현재 2.25%)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 증가 및 주택가격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른다면, 집값과 전세 가격 급등이 아닌, 하우스 푸어 문제가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말 또는 내년까지 기준금리 최고 4%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더 높이 오를 가능성이 있음.

2)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추이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현실과 무관하게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주장 중

-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은 2022년 7월 31일에 2주년을 지나 순항중으로, 개정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이 새로이 계약 갱신 중이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발생하였던 이중 가격의 문제는 신규 계약자가 2년 더 계약 갱신을 완료된 이후에는 각 지역 평균적인 임대료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 전세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세 사기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뿐, 아무런 민사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연 5%) 적용을 받은 갱신 전세는 깡통 전세의 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 계약으로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깡통 전세화될 개연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한국은행이 2020년 5월 역사상 최저금리 0.5%로 인하하면서, 급등한 전세가격이 순차적으로 2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깡통 전세의 문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전세는 그 자체로 임대료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무이자 담보 대출로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에는, 전세가격 또한 급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 내 논의 필요.

- 제도권 정당에서는 1 ~ 2년 내 여론을 감안한 정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시민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추후 금리 인하시 전세 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강통 전세와 전세 사기 현황(2021년 4월 기준)

2019년 상위권 임대사업자, 2년 뒤 전세금 사고 현황

2019년 순위	이름	보증금 사고 건수 (2021년 4월)	사고 금액	HUG 전세보증보험 대리 상환액
1위 (594채)	진모(48)씨	160건	305억7150만원	282억1425만원
2위 (584채)	김모(41)씨	94건	183억3600만원	163억2400만원
4위 (490채)	이모(63)씨	283건	574억400만원	569억1200만원
24위 (283채)	강모(53)씨	45건	84억5700만원	80억1700만원
26위 (276채)	박모(31)씨	69건	158억1700만원	123억1000만원
32위 (245채)	박모(29)씨	67건	145억9800만원	118억8300만원

 2년 뒤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

 모녀 전세 투기단

〈자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2021년 5월 11일자 국민일보 “전세사기 ‘그놈’은 빌딩 짓고... 피해자는 ‘내 돈 줌’ 피눈물“에서 인용

다. 주택 자산 및 지역 양극화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추진

-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 전제)에 따르면,

1) 서울의 20억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 16억(공시가격 현실화율 80% 전제), 1세대 1주택자 12억 기본 공제하면 4억,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곱하면, 3억 2천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재산세 등을 합치면, 실제 보유세 총액은 대략 624만 원(실효세율 0.3%) 추산됨.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2023년 조세개편안 적용시)			
#	적요	값	비고
1	공시지가	1,600,000,000	입력값
2	과세표준	960,000,000	직접 입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3	재산세	3,210,000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	도시지역분	1,344,000	과세표준액의 0.14%
5	지방교육세	642,000	재산세액의 20%
6	종부세 공제금액	1,200,000,000	직접 입력한 공제금액 12억원
7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직접 입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사용
8	종부세 과세표준	320,000,000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9	종합부동산세	1,640,000	6억 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액 60만원
10	재산세 중복분	768,000	3,210,000 × 768,000 / 3,210,000
11	중복분 차감후	872,000	재산세 중복분(768,000) 차감 후 종부세
12	농어촌특별세	174,400	종합부동산세의 20%
13	종부세 합산금액	1,046,400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14	총 납부액	6,242,400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

2) 서울의 20억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 경우,

합산 공시가격 32억(공시가격 현실화율 80% 전제), 여기에 9억 기본 공제하면, 23억,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곱하면, 18억 4천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재산세 등을 합치면, 실제 보유세 총액은 대략 2,700만 원(실효세율 0.67%) 전후로 추산됨.

2023년 조세개편안 적용시			
#	적요	값	비고
1	자산1 - 공시지가	1,600,000,000	입력값
2	자산1 - 과세표준	960,000,00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3	자산1 - 재산세	3,210,000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	자산1 - 도시지역분	1,344,000	과세표준액의 0.14%
5	자산1 - 지방교육세	642,000	재산세액의 20%
6	자산1 - 납부액	5,196,00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7	자산2 - 공시지가	1,600,000,000	입력값
8	자산2 - 과세표준	960,000,00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9	자산2 - 재산세	3,210,000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10	자산2 - 도시지역분	1,344,000	과세표준액의 0.14%
11	자산2 - 지방교육세	642,000	재산세액의 20%
12	자산2 - 납부액	5,196,00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3	공시가격한산	3,200,000,000	입력값 한계
14	중부세 공제금액	900,000,000	직접 입력한 공제금액 9억원
15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직접 입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사용
16	중부세 과세표준	1,840,000,000	(공시가격한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17	종합부동산세	17,920,000	25억 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액 600만원
18	재산세 중복분	4,021,379	$6,420,000 \times 4,416,000 / 7,050,000$
19	중복분 차감후	13,898,621	재산세 중복분(4,021,379) 차감 후 중부세
20	농어촌특별세	2,779,724	종합부동산세의 20%
21	중부세 한산금액	16,678,346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22	총 납부액	27,070,346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중부세+농어촌특별세

3) 현행 법에 따르면, 보유세 총액 약 4,800만원 전후(실효세율 1.2%, 아래 계산표 참조)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보유세 총액 약 2,700만원 전후(0.67%)로 내려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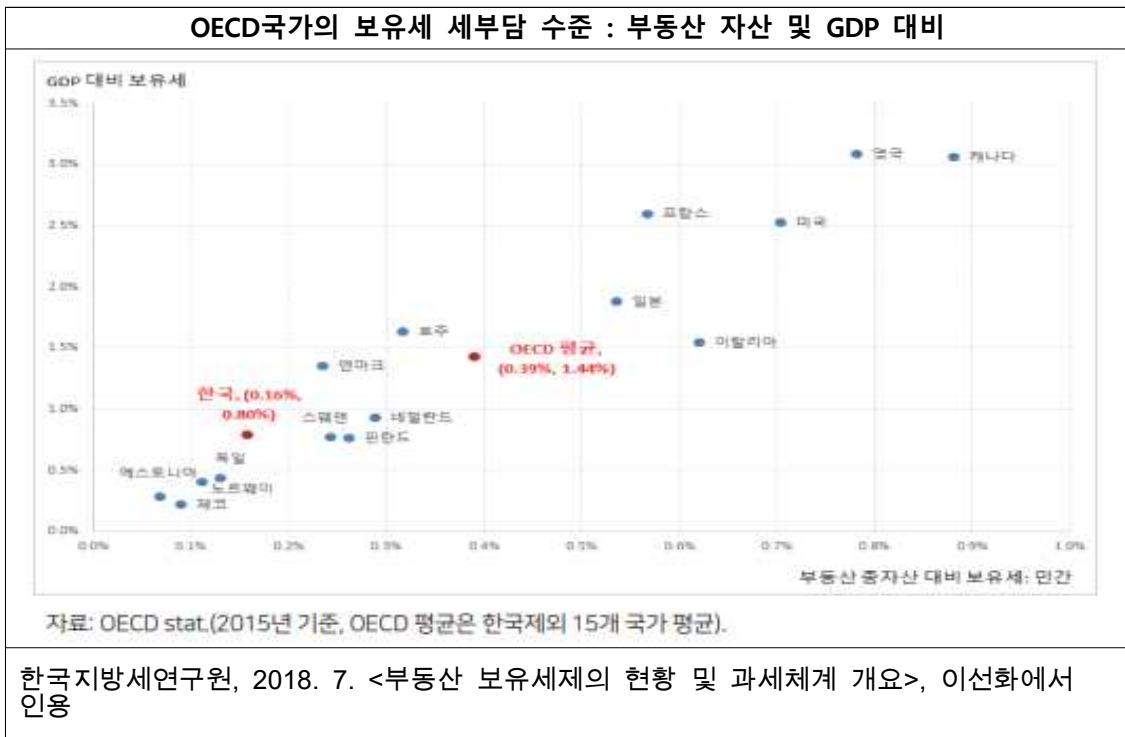
2022년 부동산 보유세			
#	적요	값	비고
1	자산1 - 공시지가	1,600,000,000	입력값
2	자산1 - 과세표준	960,000,00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3	자산1 - 재산세	3,210,000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	자산1 - 도시지역분	1,344,000	과세표준액의 0.14%
5	자산1 - 지방교육세	642,000	재산세액의 20%
6	자산1 - 납부액	5,196,00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7	자산2 - 공시지가	1,600,000,000	입력값
8	자산2 - 과세표준	960,000,00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9	자산2 - 재산세	3,210,000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10	자산2 - 도시지역분	1,344,000	과세표준액의 0.14%
11	자산2 - 지방교육세	642,000	재산세액의 20%
12	자산2 - 납부액	5,196,00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3	공시가격합산	3,200,000,000	입력값 합계
14	증부세 공제금액	600,000,000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금액 6억원
15	증부세 과세표준	1,560,000,000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6	종합부동산세	34,560,000	12억~50억 원 세율 3.6%, 누진공제액 2,160만 원
17	재산세 중복분	3,409,430	$6,420,000 \times 3,744,000 / 7,050,000$
18	중복분 차감후	31,150,570	재산세 중복분(3,409,430) 차감 후 증부세
19	농어촌특별세	6,230,114	종합부동산세의 20%
20	증부세 합산금액	37,380,684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21	총 납부액	47,772,684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증부세+농어촌특별세

4)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에 있어, 서울과 지방을,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4억 짜리 10채, 5억 8채, 10억 4채, 20억 2채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종부세율이 부과됨.

가) 이 경우 실질적인 투자수익율이 높은 서울에서 주택 투자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주택 투기로 인한 부작용은 지방소멸 및 지방소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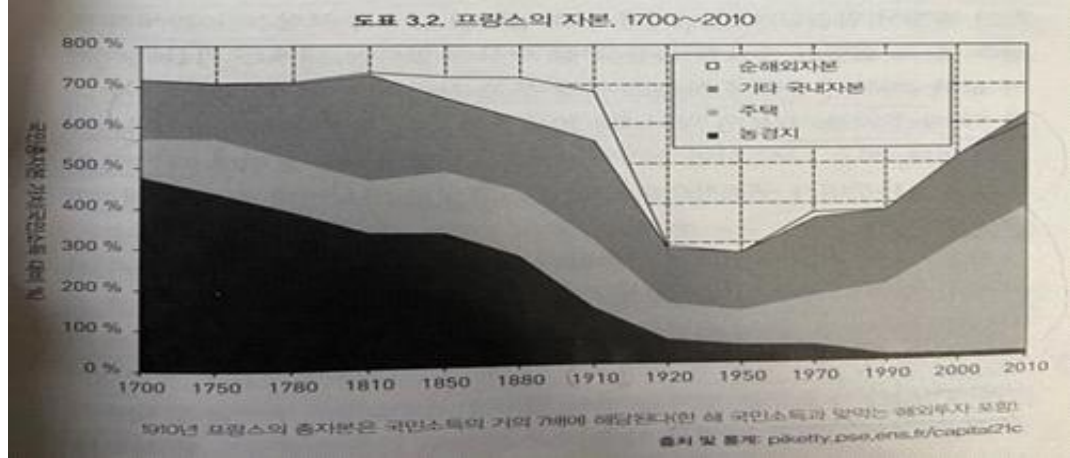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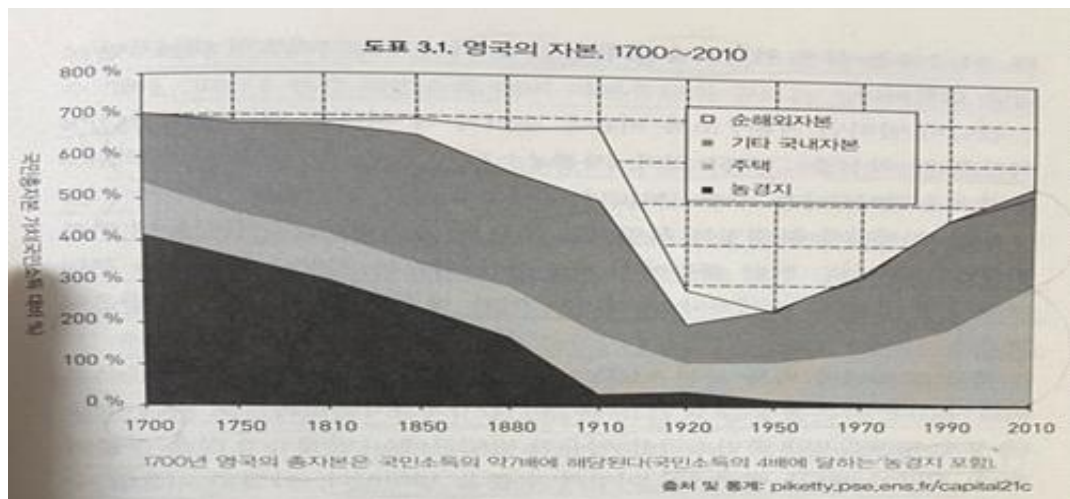
나) 외국 선진국(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에서 상대적으로 지역별 경제 집중률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것은 자산 및 지역 양극화를 막기 위함 조치인데, 이에 역행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자산 및 지역 양극화를 막기 어려움. 독일이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지구촌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보유세율이 독일을 따라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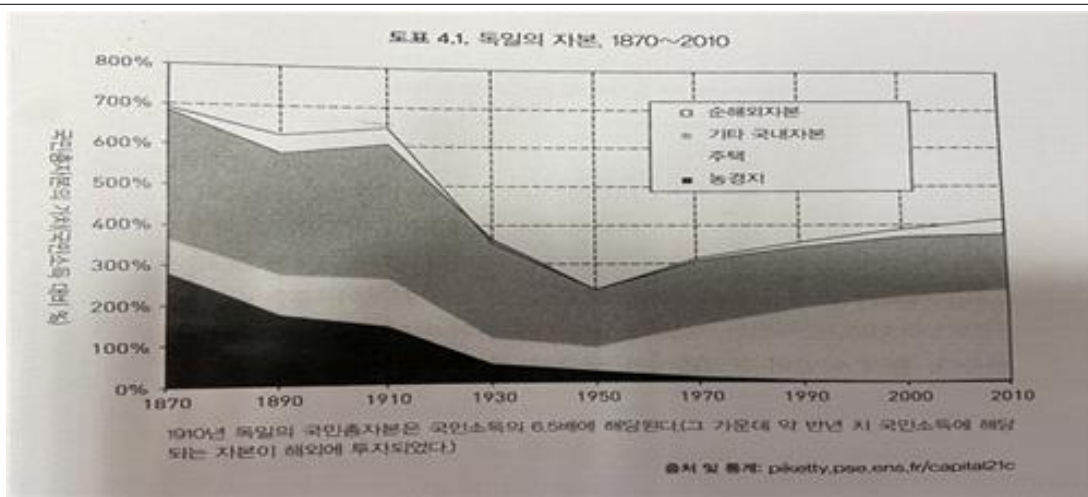
5) 주택으로 집중되는 자산집중화 경향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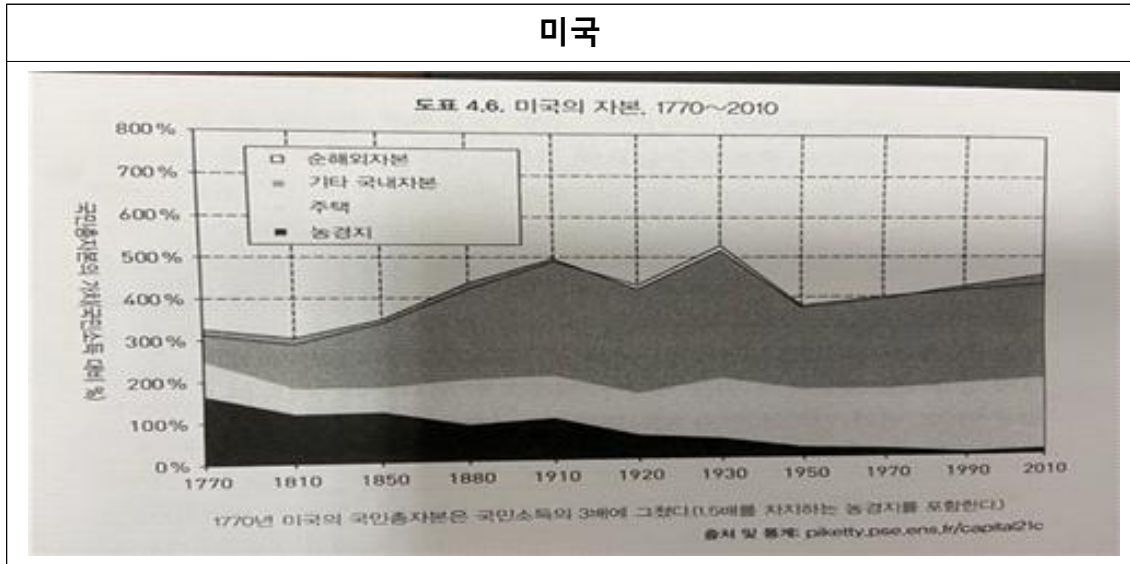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확인되는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 선진국에서 모두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주택으로 집중되는 자산 집중화 경향이 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으로 집중되는 자산집중화 경향을 권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주택에 대한 주택 투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음.

영국과 프랑스



독일





5. 결론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통하여 재건축 시장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적극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인상을 상한 제도는 이미 안정화 추이에 들어섰는데, 이에 반하는 엉뚱한 주택임대차 정책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금리 인하기에 체결된 빌라와 오피스텔에서의 깡통전세가 2년이 지난 현재 금리 인상기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투자수익율이 높은 서울에서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택 투기로 인한 부작용은 지방소멸 및 지방소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사실상 더 이상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준만 교수는 “부동산 약탈 국가”라는 책(213쪽)에서,

수도권 집중을 통한 부동산 약탈 방식을

“첫째,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통해 서울로 인구가 몰리게 한다.

둘째, 서울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셋째, 신도시 건설이 불러온 교통난 해결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수도권 교통 시설에 국부를 탕진한다.

이 사기극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며, 수도권 신도시·교통시설 건설은 끝없이 반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제 4

노동 정책 평가

-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 친기업적 노동정책

| 이용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1. 윤석열 정부의 노동분야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22. 2. 24.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발표
2022. 3. 9.	윤석열 대통령 당선
2022. 5.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
2022. 5. 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22. 5. 16.	윤석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2022. 6. 2.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헌청지회 파업 돌입
2022. 6. 7.	화물연대 파업 돌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이자 정부 상대 파업으로 향후 노정관계 가늠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발언 -국토교통부도 ‘파업’ 대신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강조 -이후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어명소 제2차관·8일 기자간담회)이라거나 “국토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원희룡 장관·10일 취재진 질의)는 식의 소극적 자세
2022. 6. 9.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회의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 고용노동 전반의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 -노사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차관)에 규제 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도

	출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
2022. 6. 10.	<p>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자율’, ‘법과 원칙’ 강조 -“노·사 문제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 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많고요”</p> <p>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장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여 인증을 받은 경영책임자 등은 형의 감면 가능</p>
2022. 6. 14.	<p>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합의로 파업 종료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고 말함(연합뉴스)</p>
2022. 6. 16.	<p>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u>-규제혁파,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경제 형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u> <u>-(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 애로 개선 추진(처벌규정, 작업중지 등 법리적 문제점 개선)</u>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u>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u>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u>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u></p>
2022. 6. 22.	대우조선 하청지회 접거 농성 시작
2022. 6. 23.	<p>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여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마련 -그 밖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결정</p>
2022. 6. 27.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22. 6. 30.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전담자 지정 및 국민제안 창구 운영 활성화
2022. 7. 13.	<p>「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출범 -법무부와 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 12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p>

	<p>-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 규정을 파악하였고,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p> <p>-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 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p>
2022. 7. 14.	<p>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관련 담화문 발표</p> <p>-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천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p>
2022. 7. 15.	<p>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p> <p>-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p> <p>-윤 대통령은 이정식 장관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p>
2022. 7. 18.	<p>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p> <p>-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천명, 불법행위 중단 촉구</p> <p>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p> <p>-전문가 12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중심 4개월간 집중 논의</p>
2022. 7. 19.	<p>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p> <p>-“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p>
2022. 7. 21.	<p>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p> <p>-연금·노동·교육 개혁 강조, 대우조선 하청파업 언급하며 불법행위 엄정대응 강조</p>
2022. 7. 22.	<p>대우조선 하청지회 파업 합의·종료(파업 51일만)</p> <p>-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등 합의</p> <p>-손배 면책은 합의 불발</p> <p>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p>

	<p>-“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u>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u> 이번 합의는 <u>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u>입니다……정부는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u>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u>입니다……<u>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합니다</u>”</p> <p>윤석열 대통령, 정부 부처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u>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u>”, “<u>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u>”, “<u>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u>”, “<u>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u>”, “<u>우리 정부에서 (이들 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u>”고 강조</p>
2022. 7. 26.	<p>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대통령직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10개 추가</p>
2022. 7. 28.	<p>국민의힘, 경사노위 대체할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 구성 검토 중이라는 기사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가 모여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 검토.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u>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당정이 촘촘한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u>”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2일 사퇴해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p>
2022. 7. 29.	<p>“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차 워크숍 개최 -좌장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문가 간사는 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가 맡기로 결정 -노동시장 개혁과제 추가 발굴,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p> <p>「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 발표</p>
2022. 8. 3.	<p>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하여 업무보고</p>
2022. 8. 4.	<p>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2022. 2. 3.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임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중 1명을 과반수 노조의 추천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를 받은 2명의 노동자 중에서 임명해야 함</p>
2022. 8. 8.	<p>한겨레,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보도</p>

	<p>-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을 보면,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 유연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 등 노사관계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 산업안전 분야, △임금피크제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이 포함</p> <p>-국무조정실은 사실상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내용을 덩어리 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p> <p>-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만들고 있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총리)의 분야별 10개 팀 가운데 '고용노동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노동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 팀장을 맡고, 노동부 퇴직 고위 관료 역시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짐. 추진단은 이달 말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p>
--	--

2. 윤석열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

가. 후보자 시절 노동 공약

국민의힘은 2022. 2. 24.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하였다. 그 중 노동 분야 주요 공약은 아래와 같다.

<p>○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규직 유지 하 풀타임과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 및 고액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p> <p>○ 대화과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대기업집단과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마련, 노사 불법 엄정 대응</p> <p>○ 임금체계 개선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선</p> <p>○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 정규직이 필요한 기간 시간제 선택,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p>
--

나.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2. 7. 26. 국무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6대 목표, 23개 약속)를 확정하였다. 그 중 노동 분야는 세 번째 국정 목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열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정리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 과제목표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 기대효과

○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 과제 목표

- 공정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주요 내용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 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 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 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기대 효과

-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 제고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과제 목표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주요 내용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기대효과

-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과제 목표

- 구직자·기업에 수요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 주요 내용

○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 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채용 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 기대효과

○ 구직자-기업 등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전달 체계 간 연계·협업으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 과제 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 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주요 내용

○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

○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

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기대효과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 및 원활한 직무전환 지원
-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과제 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주요 내용

-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 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 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 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 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 확산
- (일터 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 업종 다양화,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
 -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HRD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

기대효과

-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과제 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 제고

□ 주요 내용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 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 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 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일정 기간 구독형으로 제공 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 기준 완화
-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
-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 제고

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는 2022. 6.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노동 분야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단 : 획일적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연공 중심 임금체계 등이 청년·여성 등 신규채용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약

-체질 개선 도약경제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선정**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 (경제 형벌규정)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 발굴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 추진('22.7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전문가 TF 운영).**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 여건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각 부문별로 개혁과제 구체화·추진방안 마련(~'22년)

<노동시장 개혁방안>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22.6월 중 구체적 추진 방향 확정·발표)

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 등
-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 ▶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②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

- (정보제공 강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 보급
- (컨설팅 확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 지원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22.下)

③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논의 추진

- 경사노위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기타 노동 분야 관련 내용>

■ 사회안전망 강화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상병수당 도입 추진
-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 기반으로 개편 추진
 - 사회적 논의 통해 자영업자 특수성 감안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

■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 구직자·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 6. 23.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의 우선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시간 제도 개선

-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주에서 월로 확대 검토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 스타트업·전문직 특별연장근로 확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폐지

○ 임금체계 개편

-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확산
- 직무별 임금 정보 제공
-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안착 지원
-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검토
- 이를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여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마련
- 그 밖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마.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보고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 7. 15.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 3대 핵심 추진과제 선정**
- **노동시장 개혁**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경사노위 특위 구성하여 추가 개혁과제 선정·논의
- **중대산업재해 감축** : 감축 로드맵 수립·추진, 산업재해 취약부문 지원, 사업주 책임 완화와 형벌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직접 일자리 사업과 소득지원방식 탈피, 기업인력난 해소, 구직자 등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기업·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 지원

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가.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친기업 반노동

통상 노동 정책은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안전, 노동복지 정책 등으로 얘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서 확인되는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사관계 정책의 부재, 노동유연화, 노동안전의 후퇴, 노동복지에 대한 소극성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 3권 행사의 약화, 고용과 노동시간 및 임금 등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확대·강화,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범조차 규제로 인식하고 후퇴시키는 태도, 핵심적인 노동복지정책 대신 부차적 또는 현상 유지 수준의 노동복지 정책, 경제 형벌 규정의 완화 등 친기업 반노동 색채가 너무 명확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목표를 ‘노동존중사회’로 내걸었다. 노동존중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거나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나. 노사관계 정책의 부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분야 국정과제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이외에는 노사관계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현실에서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사관계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또한 ILO 기본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한 마당에 국제노동규범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징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초기업단위 교섭촉진제도 마련,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정비, 행정개입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폐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함에도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강화만을 꾀하는 것은 노동 3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권리 행사의 한계가 명확한 노사협의회를 노사관계의 주요 주체로 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된다.

한편, 과거 보수정권이 법과 원칙을 내세웠을 때 그것이 노사관계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이 향후 어떻게 현실화 될지는 쉽게 예상된다. 이미 화물연대 파업과 대우조선 하청파업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통해 이와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결국 현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은 허구일 뿐 사용자는 봐주고 노동자만 몰아세우는 편향적인 노사관계가 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진정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기만적인 수사나 노동 3권의 형해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비준·발효된 ILO 기본협약의 존중과 이에 입각해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노동유연화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노동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고용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유연화로 구분된다.

먼저, 최근 보도로 확인된 바와 같이 현 정부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지침' 등 양대 지침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현 정부는 이를 덩어리 규제로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제한과 노동조건을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따라 취

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대폭 완화 또는 개악한다면 해고의 자유와 노동조건에 일방적 결정으로 귀결되어 결국 헌법적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근로관계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이 갖는 파괴력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셋째, 이와 같은 고용유연화 정책은 현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편향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와 연공 중심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핵심적인 노동정책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 공약에서부터 국정과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에서 일관되게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이 내용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실상 거의 유일한 노동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하여,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법제의 원칙이 다양한 변칙적인 제도(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노동시간법제의 적용 제외 등)를 통해 형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나 연장 노동시간의 관리 단위 확대 등은 장시간 노동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노동시간 저축계좌제는 오히려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연장·야간노동에 수당 축소, 휴직 강제 등의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지금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여전히 실노동시간단축 정책을 구사할 시점이다. 이와 달리 오히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시간법제는 무력화되고, 장시간 노동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ILO는 2019년 발행한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일, 주당 최대 노동시간 설정을 포함한 노동시간 규제를 보편적 노동권의 하나로 명확히 한 바 있는데, 연장노동시간을 주가 아닌 월 단위로 관리하자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정책으로서 이렇게 될 경우 불규칙노동과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발생한다. 오히려 지금은 1일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도입의 핵심 논거 중 하나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든다. 그러나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관리 및

통제권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작업지시권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노사의 자율적 선택이나 노동자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란 상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강요된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

둘째, 현재의 상황에서 연공급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직무·성과 평가의 한계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한국의 임금체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연공급이 아니라 기업별 임금체계라는 것이다. 동일 직무에 대한 기업별 임금 격차는 연공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원·하청 구조의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지금 당장 추진할 임금정책은 혼란만 야기할 연공급의 폐지가 아니라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실질화 등을 통해서 기업별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 정책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시장 영역에서 기업에 편향적인 정책 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책이 현실화 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선진국에서 주 35시간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주당 90시간도 가능하게 하는 암울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법 마련,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규범적 보호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한 시점이다. 무늬만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선이 필요하다.³⁶⁾

라. 노동안전의 후퇴

윤석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완화하고, 그조차도 이를 강제성이 없는 지침 또는 매뉴얼로 규율하자는 것이며, 형량도 낮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조차 규제로 인식하는 연장선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을 수용한 셈이고, 국민의힘은 이미 같은 기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해예방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노동안전정책의 후퇴는 사실상 중대재해법의 형해화를 의미한다. 지금은 오히려 중대

36) 2022. 6. 24. 발표한 민변 노동위원회 논평 참조

재해법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과 엄중한 적용을 통해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마. 노동복지의 소극성

현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을 피하고 효과가 의문스러운 간접적인 정책 수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분배개선’ 효과가 가장 높고, 직접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에 간접적, 부분적인 효과만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확충 방안이 없고, 대신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우선 정책으로 고려되었다.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주변부 정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나아가 ‘사회적 논의’ 등의 전제를 달아 상병수당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 시기 확인된 바와 같이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도입,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 기타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

현 정부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저임금 가이드라인, 인력감축, 임금삭감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강행 등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 등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이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공공부문 ‘혁신’은 이율배반이다.

또한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에 따른 산업전환, 일자리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없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언급하면서 이와 무관한 노동시간 및 임금유연화 정책만 강하게 밀어붙일 뿐이다. 또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은 전무하다.

사. 노동 정책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

현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노동 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인식하고 경제부처가 노동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 분야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들마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덩어리'로 규정되고 이를 모두 폐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실제로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규제폐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최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서 고용·노동 분야 규제의 덩어리과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림 1] 2022. 8. 8.자 한겨레 기사 일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주요 내용			
고용경직성 완화	노사 간 동등한 협력환경 조성	사업장 안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 사유 확대 ■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피크제 확대 ■ 최저임금제 개선 (업종별 차등적용 등)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 노사 간의 힘의 균형과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이라는 근대 노동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정책 방향이다. 애초에 노동법과 노동 정책은 사회법과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조차 없이 이를 '규제'로 파악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전근대적인 노동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받아쓰기 한 것처럼 반노동 친기업적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데, TF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민간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거나 '공정경제3법, ILO관련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 등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불안과 애로가 증대됐다'면서 이들 법령에 대한 개선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다.

반면, 현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한다. 사용자단체는 꾸준히 방문하고 대화하지만 노동계와는 대화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다. 심지어 현재 추진 중인 현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연구회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계가 철저히 배제된 일방통행식, 편향된 정책 추진 방식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4.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현안 대응 평가

가. 노사 자율을 노사관계에 대한 무대응 또는 방치와 동일시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대응 기조는 ‘노사 자율’과 ‘법과 원칙’으로 요약된다. 노사자치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지도이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부의 무관여나 무대응 더 나아가 방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은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로서 이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안전운임제는 매년 국토부 장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연말에 일몰이 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그간의 성과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노정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이 시작된 마당이었다. 이처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애초에 노사 자율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헛다리를 짚은 것이고 교섭 파트너였던 국토교통부의 운신의 폭을 좁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였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화물연대는 “3년간 국가에서 시행한 법 제도에 대해 이제 와서 국가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물노동자는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하였고, 공공운수노조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한 정부 기관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시기가 정권 초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일 ‘노사 자율’, ‘엄정 대응’만을 이야기하니 어느 누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나서려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무능과 함께 노사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대우조선 하청파업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하청지회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비로소 거액의 손해 운운하며 나섰지만 정작 이 문제가 발단이 된 시점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이고,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산업은행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파업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역시나 노사 자율에만 얽매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나. 편향적인 현안 대응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태도는 노동 정책만이 아니라 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 ‘노사 불문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법이고 원칙인지 알기 어렵다.

이는 대우조선 하청파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하청파업에 등장한 것은 뒤늦게 하청지회의 파업이 불법이니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다. 그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과 공권력 투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령 일부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 애초부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부터 언급하는 것은 ILO가 언급한 것처럼 매우 후진적인 정부 대응이다.

더욱이 정부는 하청지회의 파업 투쟁이 부분파업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던 중 사용자들의 폭력적인 파업 파괴 행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교섭거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의 불법은 눈감고,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행사에만 불법으로 단죄하겠다는 편향적인 태도는 현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공허한지 잘 보여준다. 현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저 효과적이고 자의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다.

다. 노사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

화물연대 파업이나 대우조선 하청파업 모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 하청파업을 통해 원·하청 사이의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의 실질화,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 3권의 행사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제기되었으나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계획도 없다.

라. 노사분쟁의 장기화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및 노동 현안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결국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이미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riba게뜨지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등 여러 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들 장기 투쟁 사업장의 경

우 사용자의 불법이 투쟁을 야기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언급하는 ‘법과 원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허구적인지 명확하게 확인된다.

5. 결론을 갈음하여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 및 방향은 명확하다. ‘정부가 곧 기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권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경우 애초에 구상했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은 광범위하게 추진될 공산이 크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마찰도 상당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동계와의 힘의 관계,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 형성 등의 요소들이 작용하여 그 방향과 정도가 좌우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이유이다.

토론 1

중소상인 정책 평가

민생기반 현안대응과 생태계 전환 대비 구조적 전환필요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 발제문 Comment³⁷⁾

1)중소상인 정책평가(양창영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손실보상 및 채무조정 정책지적. 코로나19 피해 대상 영역과 사업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문제 보완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으며, 선제적 구제로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성에도 도덕적 해이 이슈를 극복해야 함에 동의

○민간 주도나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지적. 시장 원리와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는 민간 자율은 궁극적으로 시장실패와 그 영향 심각해질 것으로 정부의 책임회피라 할 수 있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못하고 손실보상 역시 일시적 조치로서 '손실보전금' 약 23조 원 지급으로 무마,

○현안 대응에 집중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현시점에서 최대한 풀어가야 다음 정책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정책이 보이지 않다는 점에 동의

2)가계부채 정책 평가(신동화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코로나19 이후 부채위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외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및 상시적인 채무 조정 개선 방안 부재, 캠프의 경직된 채무조정 및 과잉 추심, 부실 채권 적기 상각처리 및 채무감면에 소극적, 채권추심대리기구라는 과거 사례에서 비롯된 비판, 정부의 금융정책 역시 무분별한 대출 동원을 방조 지적에 동의

○<채무발생 및 보유 단계에서의 정책/제도적 과제>, 대출규제 강화, 즉 현행 DSR 산식(전세

37) 본 토론문 가운데 7.26 필자의 발제문 '경제위기와 소상공자영업 대응책 검토 및 보완'과 민주연구원 주관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정책대안'관련 필자의 토론문 일부를 활용 재구성하기도 하였음

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과 전월세보증금까지 포함) 실질화, 불공정과잉대출 규제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정 최고금리를 과도하게(2배) 초과하는 대출이나 미등록 대부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의무까지도 무효화 동의

○<채무청산 단계에서의 정책/제도적 과제>, 지역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채무상담 기능을 확대, 법원(도산부),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부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함에 동의

2.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자영업자·가계부채 정책

1)윤정부정책, 글로벌 주요 트렌드와 다른 방향

○코로나19 4단계 대응방안(OECD,2020)에서 제안한 '1단계:위기→2단계:봉쇄→3단계:전환→4단계:포스트 코로나' 과정이 있고, 영미 주요 선진국은 OECD안과 유사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은 3단계 후반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일반적 트렌드와는 다소 다른 방향을 선택

-정부의 재정전략과 세제 개편안을 보면, 투자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 세제 정책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경감 정책과 특히 증세 정책이 핵심적임에도 오히려 재벌대기업부자감세 등을 선택하고, IMF(2022,3), 한국의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및 재산세 인상 등 강조했으나 반대로 LTV를 지역과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 등

○윤 정부의 경제정책의 화룡점정은 '2022년 세제개편안(7.21)'임. 그 이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국가재정전략회의(7.7)',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추진 현황 및 계획(7.14)'등을 보면 시장(민간)주도 성장과 재벌대기업 투자유인, 확장에서 긴축재정 전환, 코로나19 소상공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등으로 모호한 철학과 가치였으나 세제 개편안은 재벌대기업과 대주주, 자본가와 부유층과 기득권을 위한 정책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음

2) 산업구조와 생태계 전환 대응 부족

가. 온라인 플랫폼 구조의 공정성 확보 미흡

○산업생태계의 경쟁 촉진과 불공정 관행 제거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관련 정책발표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영업 관련 정보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이미 발생하고, 업종별 독과점적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 정부의 '시장과 민간 자율' 강조는 생태계 그 자체를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가에게 맡기겠다는 것임

○정부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한 공정위의 발표내용은 미흡하며, 현시점에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시도가 필요함.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1차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온플법의 특징으로 보이는 단순한 행위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조적 개혁에 집중해야 하고, 행위 규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처벌도 중요 예컨대 독과점행위 차단 위해 플랫폼 시장 전담 감시 및 평가 기구 설치 등

-산업생태계의 대전환 와중에 더욱 중요해지는 실질적 가치는 '거래 관행의 공정성'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월적 지위 남용 강력한 통제는 물론 보다 근본적인 독과점적 시장구조 형성의 억제가 중요

<p><미국></p> <p>①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독과점 플랫폼이 자기제품 판매목적으로 자기 플랫폼 사용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부과</p> <p>②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 독과점 플랫폼이 자기상품 우대하거나 판매사업자 제품에 불이익, 차별취급 금지</p> <p>③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독과점 플랫폼이 타 기업주식·자산 인수시 반경쟁성 추정. 거대독점 출현방지</p> <p>④ 정보의 호환과 경쟁 촉진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때 한 플랫폼이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의무화</p> <p><EU></p> <p>-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2019년 선제적으로 제정 시행 중</p> <p>-2020.12.15.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새로운 EU 전반적 규제에 대한 두 가지 입법제안서(proposal) 발표하고, 2023년 봄부터 시행 목표로 적극 추진 중</p>
--

나. 한국 소상공자영업 생태계 변화 양상 파악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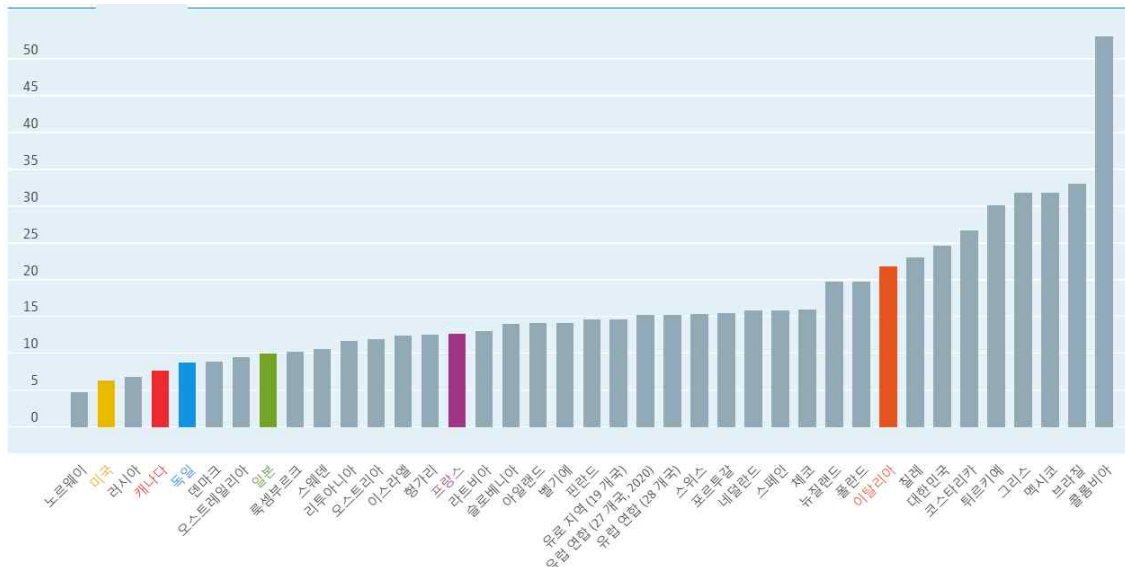
○현재 제시되는 소상공자영업 통계, 소상공자영업자 정책 마련에 충분인가. 특히 온라인 생태계 변동성을 감안하면 현행 통계만으로는 합당한 정책 구사하기에 역부족. 단순 소상공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정책 마련하기보다는 광역과 기초, 대도시와 소도시, 농어촌지역, 업종, 사업

자별 다양한 특성(가족, 자산, 소득 등) 등이 포함된 세밀한 통계자료 필요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중요한 배경은 한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해야하기 때문임.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경제의 외형적 위상은 상위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중진국 수준이며, 산업생태계 구조개혁 없이는 현시점의 소상공자영업영역의 문제는 해소할 수 없음

○소상공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속에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보면 현안 대응 중심으로 반복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예산 낭비 구조

<그림. OECD 관련 국가별 자영업비중>



출처 : OECD, Self-employment rate.(Accessed on 12 August 2022)

주: 한국 2019, 일본, 뉴질랜드, 튀르키예, 미국, 브라질,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EU27 2020년, 나머지 2021년 기준

-한국 자영업 비중이 높은 배경과 적정 비중 유지를 통한 사업자의 삶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최소 550만~920만에 이르는 관련 주체들에 대한 별도의 세밀한 연례 기초 통계조사작업 필요

-OECD 기준 취업자대비 자영업 비중은 한국 24.6%, 일곱 번째(그림 참조). 국가별 자영업자(고용주, 무급가족근로자+생산자협동조합 구성원 등)비중은 경제성장의 역사와 그 경로, 산업구조에 따라 차이 발생. 특히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발전 단계로의 전환과정에서 농어촌 인구가 공장근로자 및 도시 이동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급증 후 감소, 한국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 1인당 GDP(2021년 기준), 콜롬비아(92위), 브라질(82위), 터키(83위), 멕시코(74위) 그리스(45위) 코스타리카(66위), 칠레(58위) 등으로 한국 29위 (34,994\$)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미흡

3. 소상공자영업 관련 정책(100일 평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구체적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음. 그러나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미래를 대략 예측할 수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현안 대응 중심이라는 한계를 넘어 이제부터는 미래 산업생태계 전환에 대비 구조적 접근 필요. 문 정부는 초기 구조적 개혁의 관점을 가지고 시도했으나 지속되지 못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구조개혁보다는 현실 문제 대응에 집중. 아울러 현안 문제를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확장재정정책을 제외한 대부분 과거 관행 속에 머물렀음

-현시점 윤 정부 역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예컨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의 중단과 건축재정전략으로의 전환,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 등

1) '소상공자영업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정책

i)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는지?

ii)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새출발기금 의미 있을 것이지만 캠퍼의 역할과 금융기관의 자발적 지원, 성실 대출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논의 필요. 소상공자영업자, 위기 시에 어려움 없는 자금 조달이었으나 어차피 갚아야 할 부채임. 이 같은 자금지원은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와 채무상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고정비절감과 매출 증가 지원 정책 및 특히 한계 봉착 사업자의 폐업과 사업 전환시기 등을 감안한 선별적 지원. 원리금감면 및 만기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면밀하게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소상공자영업자 금융지원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

iii)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임대료 나눔 제도는 위기적 상황(특별재난지역 선정 등)에서 조속한 실행과 경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 확대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 필요. 아울러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하여 국회에 계류된 이른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나아가 일상적으로 매출액변동과 임차료와 연계시킨 임대차 제도 적극 검토

iv)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AI기반 상권정보시스템 구축과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지원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별 공공플랫폼 구축지원, 창업교육 6개월 교육훈련 기간 1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 지원금 연계, 동시에 기존사업자(오프라인) 경쟁력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자와 기존사업자 구분한 정책 마련 필요하고 연령별 교육지원 특화

v) (디지털 전환) 전담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단기적인 사업자 편익 중요, 나아가 소비자 편익도 고려한 인프라적 지원이 각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더 우월. 특히 전통시장을 지역사회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과 국내외 관광 명소화 시도

vi) (민간 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지역 상권 활력 위한 상권발전기금 매칭 지원은 공유경제 및 공유자산 차원에서 검토

2)가계 부채 : 잠재적 위기 요인에서 현실적 위기 요소

○현 정부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7.15)”은 약 12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정책 제시

-소상공인 551만개 사의 피해 규모를 54조 원 수준으로 추산, 지난 정부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총 31조 6000억 원(1843만 개사) 지급(2022.4.28.대통령직인수위), 현 정부의 손실보전금으로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23조 원 지급한다는 점에서 고통 부담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계층별, 세대별, 영역별 갈등 심화 및 도덕적 해이 논쟁 지속

○한국 가계부채는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GDP 대비 104%를 기록, 특히 소상공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은 물론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민생경제기반 악화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큰 특징, 경기침체시기 건설 산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한 건축 및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 구조적으로 정착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등은 집값 폭등(글로벌 유동성 관점)의 악순환

-아울러 국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된 정책, 즉 직접재정지원 보다는 금융지원(대출 중심)에 집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미흡으로 소상공자영업자의 구조적인 가계부채 증가 유발

○가계부채(일반적 부채)는 그 자체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시장경제체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단. 그러나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자멸과 시스템적 경제 위기의 근본 요인이 될 수 있음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과도한 가계부채(IBRD, 가계부채 임계치 77%; 롬바르디 80%)는 개인과 가계,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악화, 소득수준에 비해 부채가 클 경우 GDP 성장 위축과 실업률상승·일자리축소, 경기 불황과 거시금융경제 안전성 위기 등으로 경제 위기 초래

○공동체의 고통 분담으로 위기 극복 필요

-가계부채는 단순히 차주의 문제라 할 수 없음. 정부의 경제정책과 특히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등의 요소가 작동.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있어서는 특정 경제주체 보다는 사회공동체가 함께 헤쳐 나가야만 조기에 수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금융기관, 채무자 등이 나누어 분담 필요 있음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본 철학이 중요. 예컨대 정부와 여야정치권 및 사회지도층 등에서 '고통 분담'에 기반한 솔선수범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금부터라도 시도 필요

○대부분의 정책은 그것이 공익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여도 그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으로 이익과 피해를 보는 영역과 집단, 주체가 발생

-사안별로는 주체들 간의 이해 상충과 첨예한 대립 발생.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영역과 집단 및 주체로부터 그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해 피해영역과 집단 및 주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원칙임*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의 원칙을 일반화(FTA농어민지원특별법 등) 시키지 못하고 그저 다수의 이익에만 집중해 왔음

-예컨대 손실보상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그 소급 적용에 대한 요구의 배경은 국가의 전국민을 위한 감염병 대응 관련 행정명령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더 크고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영역과 주체가 존재한 반면, 관련 정책으로 이익을 본 영역과 주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의 불공정성 확인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극에 달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금융기관, 정부, 채무자 고통 분담 필요

-**금융기관 책임**, 은행 등은 가계대출 1차적 공급자로서 책임. 영업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므로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에 집중하여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소홀한 책임. **정부 책임**, 거시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 감소 방지 정책과 및 복지정책 강화로 채무자들의 금융부채 상환능력 유지 등을 제대로 못한 책임과 금융정책 관점에서 건전성 관리 감독을 넘어 적정수준의 가계 부채관리 실패 책임, **채무자 책임**,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의한 구조적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평소 재무관리 및 소비행태 등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채 활용을 넘어선 자금 운용에 따른 책임

토론 2

온라인플랫폼, 부채 등 중소기업 정책

- 윤석열 정부 100일, 소상공인 정책 방향 평가와 제언

| 박승미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I. 들어가며

소상공인 생태계는 약 1,100만 명(자영업자 600만 명과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500만 명)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 주요 생태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를 넘어서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 시 국가적 경제 위기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영업 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 정책으로 이미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됨. 소상공인에 대한 심폐소생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면밀한 소상공인 정책이 요구됨.

아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대선공약 등 윤석열 정부 자영업 정책 방향을 검토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함

II. 자영업 현황

1. 대기업·플랫폼 등에 종속성 심화

○ 종속적 자영업 영역 확대

- 종래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 등과 계약관계를 맺은 가맹점주·대리점주·대규모점포 입점 점주들의 종속성과 불공정성 강화가 문제됨
-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화로 배달앱 사 등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며, 독립 자영업자들까지 종속적 자영업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

○ 자영업 영역 종속성 심화 -> 수익 배분 구조 불합리·불공정 심화 -> 자영업자 수익 악화

[사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사의 시장지배강화와 불공정으로 자영업자 수익 악화

배달앱이 급성장했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음식점업 자영업 시장 매출 등 추이를 보면, 전체 매출은 2.05배 상승했으나, 영업비용이 2.52배 상승하여 영업이익은 오히려 약 30% 감소.

- 플랫폼 구축 및 마케팅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성격
- 자영업자의 주요한 영업비용 상승요인으로 기능

<참고: 음식점업 2006 ~ 2018년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비용 등 >

(단위: 백만원)

연도	매출액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매출액		영업비용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영업비용		영업이익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영업이익	
	규모	변동 추이 (%)	규모	변동 추이 (%)	규모	변동 추이 (%)	규모	변동 추이 (%)	규모	변동 추이 (%)	규모	변동 추이 (%)
2006	42,905,284		42,905,284		31,941,711		31,941,711		10,963,573		10,963,573	
2007	47,917,210	11.7	46,719,280	8.9	35,889,347	12.4	34,992,113	9.5	12,027,863	10	11,727,166	7.0
2008	51,941,895	8.4	48,409,846	3.6	40,671,744	13.3	37,906,065	8.3	11,270,151	-6	10,503,781	-10.4
2009	56,120,621	8.0	50,901,403	5.1	45,276,701	11.3	41,065,968	8.3	10,843,920	-4	9,835,435	-6.4
2010	55,527,218	-1.1	48,919,479	-3.9	43,422,870	4.1	38,255,548	-6.8	12,104,348	12	10,663,931	8.4
2011	59,637,095	7.4	50,512,619	3.3	49,747,953	14.6	42,136,516	10.1	9,889,142	-18	8,376,103	-21.5
2012	63,119,481	5.8	52,326,050	3.6	53,590,509	7.7	44,426,532	5.4	9,528,972	-4	7,899,518	-5.7
2013	65,032,977	3.0	53,196,975	1.7	57,562,988	7.4	47,086,524	6.0	7,469,989	-22	6,110,451	-22.6
2014	68,401,860	5.2	55,268,703	3.9	59,557,240	3.5	48,122,250	2.2	8,844,620	18	7,146,453	17.0
2015	89,803,534	31.3	72,022,434	30.3	78,617,304	32.0	63,051,078	31.0	11,186,230	26	8,971,356	25.5
2016	99,311,876	10.6	78,853,630	9.5	88,136,162	12.1	69,980,113	11.0	11,175,714	0	8,873,517	-1.1
2017	107,483,063	8.2	83,729,306	6.2	98,708,343	12.0	76,893,799	9.9	8,774,720	-21	6,835,507	-23.0
2018	114,868,886	6.9	88,219,304	5.4	104,863,973	6.2	80,535,531	4.7	10,004,913	14	7,683,773	12.4

2. 부채 급증 및 취약한 부채구조

○ 소상공인 부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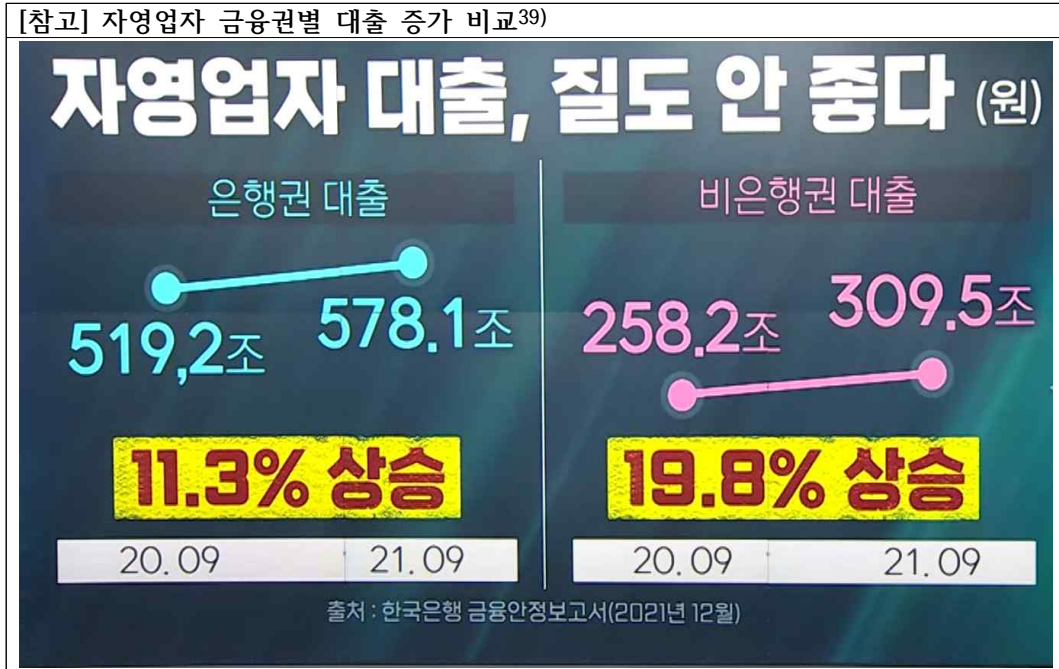
- 2022년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60.7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증가. 동 기간 가계 및 기업 신용증가율 각 16.2% 및 23.7% 고려 시 큰 폭의 증가세³⁸⁾

○ 취약한 부채 구조

- 복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 비중이 높고,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38)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증가율이 높음



Ⅲ. 자영업 정책과제

1.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 대응⁴⁰⁾

가. 문제점

- 최근 5년(2017~2021)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까지 급증.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더욱 가중

<참고: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⁴¹⁾

(단위: 건, 기간: 2017. 1. 1. ~ 2022. 6. 30.)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접수 건수	305	12	17	34	73	103	66

-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강화를 통한 공정수수료 체계 정립⁴²⁾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 최소화(수수료율 개선/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제도 마련)⁴³⁾을 대선 공약화하였으나 이후 자율규제로 방향 전환. 그러나 플랫폼 입점

39) 2021.12.23. MBN 종합뉴스, 「빛으로 코로나 버틴 자영업자...근로자보다 대출 4배 많아」 화면 캡처

40) 2021.9.15. 윤석열 대선캠프,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41) 2022.7.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2017~2021)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보도 자료

42) 2021.9.15. 윤석열 대선캠프,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43) 2022.2.9.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대선캠프

자영업자들 간 단체구성이 미비하여 협상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자율규제가 가맹본사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들의 홍보나 면죄부roman 활용된 경향이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 정립 필요

-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이라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으로 소상공인 간 양극화 심화로 대안 필요

나. 개선 방향

1)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로 집단 자치 실현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2021년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와 상생협약 체결로 실현 가능한 우선적 과제 합의

○ 협약 주요 방향

△ 정기적 협의 채널 구축

△ 플랫폼의 정보독점 방지

고객이 원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 위해 상품공급자에게 연락처 제공하고 과거 주문 횟수 제공

△ 자영업자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억제

- 점포(광고) 노출 기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고, 월정액 광고(울트라콜) 고객에 가까운 순으로 배열하는 정렬 방식 우선 노출
-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분란 방지 위해 개별 가맹점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배달 구역 설정 등

△ 특정 플랫폼 독주 방지 및 공공플랫폼과 연계 위한 호환성 확보

가맹점이 이용하는 배달주문 앱, POS프로그램, 배달 대행 프로그램과 원활히 호환성 유지

△ 리뷰 등 무형자산 보호

점포 양도양수 시 동업자·가족·직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후 수수료 등 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고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하려는 성격이 있으면 수많은 플랫폼 사의 자율 의지에 의존하여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한계 존재

2) 온라인·모바일 거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 수립

㉔ 배달 수수료 등 한도 규정

- 미국 뉴욕시 등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배달앱비용 한도 규정. 이후 뉴욕시(PG수수료와 유사한 결제수수료 포함), 샌프란시스코시, 샌마리노시는 배달 수수료 한도 규정을 법제화. 뉴욕시는 매출액의 20%, 샌프란시스코시는 15%, 샌마리노시는 15%를 한도로 규정.
- 대선공약을 정책화하여 배달 수수료와 PG 수수료율 한도 규정 필요

< 참고: 미국 배달 수수료 등 한도 규정 현황 >

구분	배달 (Delivery)	Service/ Commission	전체비용한도	시행일	비고
New York ⁴⁴⁾	15%	5%	20%	2022. 1. 24.	transaction fee ⁴⁵⁾ 3%
San Francisco ⁴⁶⁾			15%	2020. 12. 21	
San Marino ⁴⁷⁾	15%	5%	20%	2020. 10. 2.	

㉠ 온라인·모바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플랫폼사와 자영업 단체들이 개별 협상을 통해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한계.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와 코로나 등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모바일 거래 공정화법 제정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온플법 제정을 논의한 바 지속 추진 필요

3) 소상공인의 온라인·모바일 입점 및 운영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앱 문제 부각은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의 영향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 이미 화장품 업종 등 도소매업을 시작으로 시장의 장소적 시간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온라인·모바일 입점 및 운영을 지원해야.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

2. 자영업자 부채 및 경영 여건 개선

가. 자영업 인식 제고

1) 문제점

- 과거 자영업자는 소자본가로 영세할 경우에만 은혜적 시혜 대상으로 고려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전환됨. 윤석열 정부 정책은 기존 정책에서 큰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

2) 개선 방향

44) 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Title 20: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Chapter 2: Licenses, Subchapter 36: Third-Party Food Delivery Services, § 20-563.3 Fee caps (eff. 1/24/2022)

45) 결제수수료

46) The San Francisco Police Code, Article 53: Regulation of Third-Party Food Delivery Services, Sec.5302 Cap on Per-Order Fees (Added by Ord. 234-20, File No. 200398, Eff. 12/21/2020)

47) City Code of San Marino California, Chapter XIV Miscellaneous, Article 19 Third-Party Food Delivery Service Fees Section, 14.19.02:PROHIBITIONS (2-10-2021)

- 개별적·일회적 지원 정책을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마이너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 영역을 주요 정책 대상화하여 세분화되고 정확한 정책 수립 및 집행 필요

나. 실효적 손실보상

1) 문제점

- 열악한 계층으로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대출 등 금융지원과 제한적인 지원금만 지급하여 소상공인 부채 급증 -> 힘없고 소외된 자영업자 현실 보여주는 단적 사례
-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방역지원금 형태로 일부만 지급

2) 개선 방향

- 기본적으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 행정 명령에 의한 자영업자 손실은 은혜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손실보상의 문제. 온전한 소실 보상으로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채를 전체 국민이 일부 분담

다. 자영업자 임대료,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고소득 근로소득자에도 적용되고 있는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음.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 시 임대인에게 일정한 세액공제를 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을 대선공약에 넣었음. 그러나 이는 건물주에게 은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인 임대인들이 참여하고 일시적이어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규모나 지속성 면에서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 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필요.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자영업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될 것.

<참고: [의안번호 21018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37인)>

주요 내용

가.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함(안 제122조의3).

나.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 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안 제96조의4).

3. 열위적·종속적 자영업자 보호

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 취임 10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이 공석일 뿐 아니라 필수물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가맹본부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공개 확대·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강구하는 등 자율규제만으로 접근

나. 가맹사업 분야

1)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 의무

㉠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거래조건 협의 의무는 필수적.

- ① 상당수의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 함에도 대화조차 되지 않아 기자회견, 집회, 시위, 농성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
- ②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이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에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필수적 요소
- ③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 실천안의 핵심 결의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 실천안(2017. 10 .27)중 첫 번째 결의안으로 가장 핵심 사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자 변경 후 이전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고 반대하는 것은 반신의 행위

㉞ 개정 방향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가맹 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 규정

2)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㉞ 필요성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
- 그리고 개정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 본문에서 가맹본부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수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그 다수를 분명히 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㉞ 개정 방향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록제 도입

<참고: [의안번호 21098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㉞ 필요성

- 가맹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 마진에 있어 유통업 성격이 강함.
-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 간 수익배분에서 불합리가 발생하여 산업 성장의 주 수익을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가 있는데 이 접점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 필수물품의 정의가 모호하여 이를 남용하는 단초 제공. 때문에 명확한 정의 및 기준 확립 필요
- 정보공개서 필수물품 등재 시 실질적 심사 위해 필수적
-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

㉞ 개선 방향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의 불공정행위 신설하고 필수물품의 정의 및 기준 제시

㉞ 기대효과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경제적 공동운명체 형성으로 산업 성장 계기 마련
- 원가율 인하로 가맹점주 영업수지 개선

4)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기간 제한 삭제

㉞ 필요성

- 점주 단체 구성 및 활동 통제 수단화
- 가맹점주 귀책 사유 존재 경우 기존 갱신 거절 사유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
- 가맹사업법 제도개선 무력화
- 생존권 문제화

㉟ 개선 방향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삭제

- i) 정상적인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계약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가맹 본부에게도 이로움
- ii) 가맹본사는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iii) 이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가맹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가맹계약 위반의 경우 일반해지·즉시 해지를 인정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해지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

5) 영업지역 온라인까지 확대 및 다중 유통경로 문제 해소

㉞ 필요성

- 연혁적으로 영업지역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권리
- 가맹본부 다중 판매 경로 운용
-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상위단계의 판매자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통한 유통 외 온라인 등 복수의 유통방법을 동시에 운영하여 가맹점주 피해 확대
- 시장 형태 변화에 따라 영업지역 변화 필요

㉟ 개선 방향

- 영업지역을 독점·배타화 하고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 주문자의 소재지를 오프라인 영업지역으로 하는 점주에게 해당 주문을 귀속시켜 배송하게 하고 매출이익을 귀속.
- 예) 정관장·초록마을의 온라인 주문 가맹점주 귀속 시스템

㊱ 기대효과

-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가맹본부가 여러 유통채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예방
- 점주들이 영업을 통해 구축하고 점주들에게서 수령한 광고 판촉비로 인지도를 높여 발생한 구매를 가맹본사가 수취하는 행태 시정

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

1) 필요성

- 대규모 유통업의 성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자본 종속성이 심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급격한 온라인·모바일화는 대규모 유통업의 쇠퇴기를 앞당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이어 복합쇼핑몰 등에 입정한 소상공인들 역시 자본·정보 등의 열세로 일련의 변화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특히, 지역화폐 사용처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해외의 대규모 유통업이 갖는 직매입 거래 이미지가 덧씌워져 열악한 종속적인 자영업자 지위에 있음에도 각종 보호에서 소외되고 불공정한 거래환경에 놓여 있지만 정부 등의 지원책에서조차 철저히 소외되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대규모 유통 점포 내 입정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만을 내세우며 소상공인 외면

2) 개선 방향

가) 개별제도 보안을 통한 보호

- 실제 운영 점주와 계약체결
-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 입점 점주 일부 퇴거 시 관리비를 전가하는 등 과도한 관리비 부과 금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 검토

나) 힘의 균형을 통한 보호

○ 집단적 대응권 강화

- 정보력·경제력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으로 입점 점주들은 불공정 문제 외부 표출조차 어려움. 대규모 유통점포 내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도입하여 제도적인 대화 창구 마련. 수수료·판촉분담비율·영업시간·휴업일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불공정으로 인한 분쟁 사전 예방.
-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는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대규모 유통점포 입점 점주 포함. 거래조건 협의 시 공정거래법 상 담합 관련 규정 배제를 확인

나. 대리점 분야 제도개선

가) 대리점주 집단적 대응권 확대

나)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및 단체등록제 도입

다) 협상권 부여

라) 대리점거래 안정성 강화

- 계약 기간 중 거래 안정성 강화
해지의 절차적·내용적 제한
- 계약의 연속성 강화
- 목시적 갱신제, 갱신 요구권 도입

마) 정보 비대칭 시정

정보공개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제, 정보공개제, 정보공개서 제공제도 등 도입

다. 수위탁 사업 분야 제도개선 현안

가) 수탁사업자 집단적 대응권 확대

- 수탁기업협의회 단체등록제
- 거래조건 협의 대상 수위탁거래 일반으로 확대

나) 수위탁거래 안정성 강화

- 계약 기간 중 거래 안정성 강화
해지의 절차적·내용적 제한
- 계약의 연속성 강화
- 목시적 갱신제, 갱신요구권 도입

다) 정보 비대칭 시정

정보공개서 및 정보공개서 등록제, 정보공개제, 정보공개서 제공제도 등 도입

IV. 맺는말

- 1,200만 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 영역이 주요 정책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과
코로나19 영향 및 시장 상황 등 변화로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자영업 생태계 생존을 위한
기본 인식 전환 필요
-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영업 영역 주체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고 집단 자치 실현 즉 자영업자 조직화 및 합리적인 소통 채널 등 구축 필요
 - 가맹점주 협상권 등,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등 자영업자 집단적대응권 부여 제도화 시급
 - 온라인·모바일 거래 공정한 거래 질서 수립
- 집단적 자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온플벌 제정 등 종속적 자영업 영역에 공정한 거래
질서 보완 필요

토론 3

- 노동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문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사관계 정책의 부재, 노동유연화, 노동안전의 후퇴, 노동복지에 대한 소극성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 3권 행사의 약화, 고용과 노동시간 및 임금 등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확대·강화,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범조차 규제로 인식하고 후퇴시키는 태도, 핵심적인 노동 복지정책 대신 부차적 또는 현상 유지 수준의 노동복지 정책, 경제 형벌 규정의 완화 등 친기업 반노동 색채가 너무 명확하다.”고 평가한다. 이 평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하는 토론을 하고자 한다.

1. 노동 정책 평가에 대한 보충 의견

○ ‘노사협의회’와 ‘부분근로자대표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2026년까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가 ‘부분근로자대표’와 연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직군별 임금체계 개편 시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려고 한다.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무·직군별, 또는 업무 단위별로 ‘해당부문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유연근무제나 임금체계개편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기업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유연화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임금체계 개편 절차 명확화’를 위해, 당장 2022년부터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사업장 지도’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현장 지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보면,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폐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시정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이라는 항목에 단체협약 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행계획으로 “2022년에 불공정채용 단협 조항 실태조사(하반기), 불공정채용 단협 시정조치 관련 지침 시달(하반기), 시정조치 및 현장 지도(계속)”를 내놓고 있다.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이라고 하면 부모 찬스를 이용한 불공정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불공정채용 시정조치와 현장 지도는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설노조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합원 우선 고용'을 담은 것을 불공정채용으로 간주하고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설노조는 당국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조치는 '국제노동협약 제 98호와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올해 6월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하였다.

○ 공공부문 구조조정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기능·인력 조정'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능·인력 조정'은 구조조정의 수단이 되어왔다.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 위탁 등을 추진하는 방안인 것이다. 특히 '업무·인력 재조정 및 출자회사 정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한 자회사 전환을 다시 민간 위탁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동인이다. 공공부문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이를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하겠다는 전략은 공공성은 훼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직무·성과급제로의 재편

윤석열 정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문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직무급 원칙을 '다른노동-다른임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직무에 대한 가치 절하를 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정당화하고, 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임금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도 청소 노동은 여성의 직무이자, 전문성이 없는 직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용역으로 채용하고, 최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차별로 이어져 바로 이런 인식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는 '성과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임금의 집단성과 고정성이 무너지고, 기업의 일방적인 평가에 따라 노동자 개별의 임금 격차가 커지게 된다. 임금의 집단성이 무너지면 임금 결정 권한을 온전히 기업이 갖게 되고,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통제도 강화된다.

2. '노동자의 권리'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보는 인식

이미 발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우 심각한 인식이라,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은 모두, 노동시간 유연화를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명분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이지만,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일상생활의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주 40시간 노동

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적게 받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차등 적용 대상이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규정되면 언제라도 차등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최저임금제도가 의미없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라는 항목에서 다루지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권리로써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 항목에서 다루면서 원청의 책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 재계의 요구를 가감 없이 수용

이미 발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부는 ‘노동 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인식하고 경제부처가 노동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이다. 이것은 이 정부 자체가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 정책을 만들 때 보수적인 경제계 관료들과 재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기업규제 완화=경제 활성화’라는 인식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한 노동시간 정책은 경총의 요구(2022. 3. 27 경총 보도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미 경총이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이 중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청 책임을 없애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은 경총이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공익위원들이 용역을 권고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강하게 제기했던 내용이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덩어리규제’도 해고 사유 확대나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 고용유연화 정책도 기업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노동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만들고, 여기에서의 논의를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논의 의제와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4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정책은 ‘답정너’일 수밖에 없다. 연구회 구성도 법학전공 5명, 경제·경영 5명이며, 12명 모두가 교수진이다. 이 연구회의 간사는 그동안 경제계를 대변하여 노동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온 교수이다. 전문가의 이름을 빌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구조인 셈이다.

‘노동 정책’이 다른 정책 영역에서 다루지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기도 한다. 단체협약 시정조치가 청년정책에서 다루지거나, 기간제법 개악 역시 청년정책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민간 위탁이 ‘공공부문 혁신’ 정책에서 다루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규제 완화’ 영역에서 다루지는 등 노동 정책으로 총괄되어 있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들을 꼼꼼히 찾아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노동자 권리가 후퇴할지 알 수 없다.

3.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과의 차이점 혹은 연속성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문가 주의를 일관되었지만, 촛불투쟁의 영향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일정 정도 반영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기업과의 부딪침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 현안에서도 ‘공권력 투입’을 압박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ILO 핵심 협약 비준, 최저임금 1만 원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귀결되었고,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공무원과 전교조의 노조할 권리는 인정되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원청사용자 책임, 손배가압류 폐지 등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는 진전이 없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박근혜정부 수준의 인상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귀결되었다. 의지는 있었으나 결과가 나빴다고만 평가할 수 있을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임금체계(안)’으로 구체화된 바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체계를 설계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철회했지만,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임금을 정당화하는 임금체계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대 주 52시간제를 법제화하기는 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남용하게 만들었고, 탄력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시간의 기준을 흔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과거 정권과의 비교에서가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편화하고 확대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고 권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 중심으로 사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권리의 보편성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분할되고 위계화되기 쉽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폭넓게 조직되고,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노동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흐름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끝>

소속	직책	이름	인사발령 일자	연수원	윤석열 이력	이력	특이사항	그그 사건 수사(지휘/관여) 목록
법무부	장관	한동훈	2022.05	27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주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01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 2001~200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 2003~20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 2005 미국 뉴욕주 변호사 - 200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 2006년 현대차 비자금 - 2007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2009~2010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2011 법무부 검찰과 검사 - 2013 대검 정책기획과장 - 2015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 2016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 2017.8 서울중앙지검 3차장 - 2019.7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 2020.1 부산고검 차장 - 2020.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21.6~2022.5 사법연수원 부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대검 대선자금 수사팀 윤석열과 함께 근무 -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팀 윤석열과 함께 근무 - 2016년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에서도 윤석열과 함께 근무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3차장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 우병우 전 검사장(민정수석)의 몰래변론과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2018) -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8) -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 · 거래 사건 수사 (2018) - 최경환 전 장관 자위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2018) -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2018) -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2018)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2018) - 홍문종 의원의 기업뇌물수수 및 교비횡령 의혹 수사 (2018)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2010)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 수사 (2017) -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2016) -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2018) -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2018) -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 -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2017) -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2018)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2018) -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2018)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2017) - '성완중 리스트' 수사 (2015) -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2009)
	차관	이노공	2022.05	26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주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 1999.2 성남지청 - 1999.2 ~ 2001.1서울서부지검 - 2001.1 ~ 2002.6 인천지검 - 2003.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2005.8 대전지검 - 2007.2 서울남부지검 - 2009.2 사법연수원 - 2011.9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부장 - 2012.7 대검 형사2과 과장 - 2013.4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 - 2014.1 영동지청 지청장 - 2015.2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부장 - 2016.1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 2018.3 부천지청 차장 - 2018.8 서울중앙지검 4차장 - 2019.8 성남지청 지청장 - 2020.3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첫 발령지인 성남지청에서 윤석열과 함께 근무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4차장, 한동훈 당시 3차장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2022.05	29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 군법무관 - 2003.4 서울중앙지검 - 2005.2 원주지청 - 2009.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2012.2 인천지검 - 2014.1 서울중앙지검 - 2015.2 의정부지검 형사5부 부장 - 2016.1 법무부 법무과 과장 - 2017.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 - 2019.8 대검 대법인 - 2020.9 전주지검 차장 - 2021.7 부산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형사2부 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법인 - 고발사주 관련 공수처 입건 -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논란 -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단 공보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 SK케미칼 ·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8) -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2020)
	검찰국장	신자용	2022.05	28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군법무관 - 2002.4 서울동부지검 - 2004.2 천안지청 - 2006.2 광주지검 - 2008.2 법무부 형사기획과 - 2010.2 서울중앙지검 - 2011.9 대검 연구관 - 2014.1 제천시청 지청장 - 2015.2 대검 정책기획과 과장 - 2016.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 - 2017.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 2018.8 법무부 검찰과 과장 - 2019.8 서울중앙지검 1차장 - 2020.2 부산지검 동부지청 지청장 - 2021.7 서울고검 송무부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윤석열과 같이 대검찰청 근무 - 국정농단 특검 파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특수1부 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문종 의원의 기업뇌물수수 및 교비횡령 의혹 수사 (2018) -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8) -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2018) -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2018)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2010) - 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2019) - 공유경제업체 '타다'의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 수사 (2019) -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2019)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2017)
대검	검찰총장	-						

	차장	이원석	2022.05	27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3 서울동부지검 - 2000.2 대전지검 서산지청 - 2001.2 부산지검 - 2003.2 서울중앙지검 - 독일 연수 - 2006.8 수원지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2010.8 서울중앙지검 - 2011.9 제주지검 - 2012.7 밀양지청 지청장 - 2013.4 대전지검 부부장 - 국무조정실 파견 - 2014.1 대검 수사지원과장 - 2015.2 대검 수사지원과장 - 2016.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 2017.8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 2017.8 여주지청 지청장 - 2018.8 서울고검 검사 - 2019.7 대검 기획조정부 기획조정부장 - 2020.1 수원고검 차장 - 2021.6 제주지검 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윤석열과 함께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 파견 - 2016년 박영수 특검 활동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할) 활동,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활동 특수1부 부장 임기 겸임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2016) - 정운호 법조계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휘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2016) - 오리온 담철곤 회장 횡령 혐의 수사 (2011)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6)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2016)
	공공수사 부장	김유철	2022.05	29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 서울중앙지검 - 2002 충주지청 - 2003.2 성남지청 - 2005.2 대구지검 - 2008.2 법무부 공공형사과 - 2010.3 수원지검 - 2010.8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 2012.7 대검 연구관 - 2014.1 울산지검 공안부 부장 - 2014.8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 - 2015.2 대검 공안3과 과장 - 2016.1 대검 공안2과 과장 - 2017.8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부장 - 2018.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 - 2019.8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 2020.2 원주지청 지청장 - 2021.7 부산고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서울중앙지검 윤석열과 함께 근무 -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형사7부장 - 2019년 윤석열 인사청문회 준비단 - 2019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담당관	최재훈	2022.07	34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광주지검 - 2010.2 평택지청 - 2012.8 미국 파견 - 2014.8 창원지검 - 2015.2 법무부 형사기획과 - 2017.2 서울중앙지검 - 2017.2 서울고검 특별수무팀 (삼성 불법 합병) - 2019.8 서울중앙지검 - 2020.9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 - 2021.7 인천지검 형사5부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 - 삼성 불법 합병 수사 라인 	
	반부패 강력부장	신봉수	2022.06	29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 서울북부지검 - 2002 서산지청 - 2003.8 광주지검 - 2005.8 서울중앙지검 - 2008.8 서울서부지검 -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9 고양지청 - 2011.2 대구지검 - 대검 파견 - 2012.7 정부법무공단 파견 - 2013.2 대구지검 - 2013.4 서울중앙지검 - 2014.1 서산지청 부장 - 2015.2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 - 2016.1 해남지청 지청장 - 2017.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 - 2018.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 - 2019.8 서울중앙지검 2차장 - 2020.2 평택지청 지청장 - 2021.7 서울고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광주지검 윤석열과 근무 기간 겹침 - 2008 이명박 추가조작(bbk) 특검 윤석열과 함께 파견 - 2010 ~ 2011 대검 파견 기간과 윤석열 대검 근무 기간 이 겹침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 특수1부 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 우병우 전 검사장(민정수석)의 몰래변론과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2018)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 수사 (2017) -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 · 거래 사건 수사 (2018) -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제청장 뇌물수수 수사 (2013) - 스폰서 검사 금품향응 수수와 부패행위 목살 사건 검찰 (2010)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2018)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2019) -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2021) -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p>기획조정 부장</p>	<p>송강</p>	<p>2022.06</p>	<p>29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4 수원지검 - 2005.2 충주지청 - 2007.2 법무부 법무과 - 2009.1 서울중앙지검 - 2010.3 독일 연수 - 대검 파견 - 2013.2 창원지검 - 2013.4 대검 연구관 - 2014.1 대전지검 공안부 부장 - 2015.2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 - 2016.1 대검 공안3과 과장 - 2017.8 대검 공안2과 과장 - 2018.2 대검 공안3과 과장 - 2018.8 대검 공안1과 과장 - 2019.8 포항지청 지청장 - 2020.2 대구지검 2차장 - 2020.9 수원지검 2차장 - 2021.7 청주지검 차장 	<p>-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 수원지검에 재배당, 당시 2차 장이었던 송강이 지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국가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2011) - 광도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2011)
<p>형사부장</p>	<p>황병주</p>	<p>2022.06</p>	<p>29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4 인천지검 - 2005.2 충주지청 - 2007 미국 연수 - 2008.2 법무부 국제법무과 - 2011.2 서울중앙지검 - 2013.2 수원지검 - 2014.1 대검 검찰연구관 - 2015.2 속초지청 지청장 - 2016.1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과장 - 2017.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 - 2018.8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 - 2019.8 대검 검찰연구관 - 2019.8 대검 특별감찰단 단장 - 2020.2 서울고검 검사 - 2020.2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p>-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 재직 당시 첨단범죄수사2 부 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특별감찰단 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환 전 장관 자원의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2018)

	공판송무 부장	김선화	2022.06	30기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 2001.2 의정부지청 - 2003.2 목포지청 - 2005.2 수원지검 - 2007.2 서울서부지검 - 2011.2 대구지검 - 2013.2 서울중앙지검 - 미국 파견 - 2015.2 서울중앙지검 - 2016.1 대구지검 공판부 부장 - 2017.8 성남지청 형사4부 부장 - 2018.8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 - 2019.8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2020.9 천안지청 차장 - 2021.7 제주지검 차장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공판3부 부장	
서울 중앙 지검	검사장	송경호	2022.05	29기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 2000.2 부산지검 검사 - 2002 안동지청 - 2003.2 서울동부지검 - 2005.8 광주지검 - 2007 법무부 형사기획과 파견 - 2009.1 서울중앙지검 검사 - 해외파견(미국) - 2013.2 성남지청 - 2013.4 대검 연구관 - 2014.1 원주지청 부장 - 2015.2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 2016.1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2017.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 - 2019.8 서울중앙지검 3차장 - 2020.2 여주지청 지청장 - 2021.7 수원고검 검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특수2부 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 (2019) -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2019) -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8)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2019)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2018) -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2018) -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2018)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2018)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2010) -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 혐의 수사 (2016) -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09)

	1차장	성상헌	2022.07	30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2 서울중앙지검 - 2006.2 영월지청 - 2008.2 대전지검 - 2010.8 해외연수 - 2012.2 대검 연구관 - 2014.2 서울남부지검 - 2015.2 대검 검찰연구관 - 2016.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 - 2017.8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 2018.2 대검 검찰연구관 - 2018.8 인천지검 - 2018.8 대검 인권감독과 과장 - 2019.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 2020.2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 - 2020.9 부산지검 2차장 - 2021.7 서울동부지검 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지검 재직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2차장	박영진	2022.05	31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4 서울중앙지검 - 2007.2 여주지청 - 2011.2 법무부 상사법무과 - 2013.2 수원지검 - 2016.1 대검 검찰연구관 - 2017.8 강릉지청 지청장 - 2018.8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 2019.8 서울고검 검사 - 2019.8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 2020.2 대검 형사1과장 - 2020.9 울산지검 형사2부 부장 - 2021.7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 -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관련 증인으로 출석 *당시 논란 기사▶ https://bit.ly/3SEF8xl 	

	3차장	박기동	2022.05	30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2 서울중앙지검 - 2003.2 서산지청 - 2005.2 부산지검 - 2007.2 인천지검 - 2009.2 법무부 통일법무과 - 2012.2 울산지검 - 2013.2 서울동부지검 - 2013.8 중국 파견 - 2015.2 서울동부지검 - 2016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 - 2017.8 안동지청 지청장 - 2018.8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2019.8 인천지검 형사3부 부장 - 대검 검찰연구관(검찰개혁추진2팀장) - 2020.9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 2021.7 원주지청 지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형사정책담당관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파견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수사 	
	4차장	고형근	2022.05	31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 1999.2 성남지청 - 1999.3~2001.8 서울중앙지검 - 2001.8~2002.1 부산지검 - 2002.1~2003.2 태평양 - 2003.2~2005.2 광주지검 - 16대 대선자금 수사팀 파견 / 대검 중앙수사부 - 2005.2~2007.3 고양지청 - 2006 현대차 비자금 - 2007.3~2008.1 대검 검찰연구관 - 2007.11 삼성 비자금 파견 - 2008.1~2008.3 이명박 추가조작 특검 - 2008.3~2009.1 논산지청장 - 2009.1~2009.8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 - 2009.8~2010.8 대검 정보범죄2담당관 - 2010.8~2011.9 대검 중앙수사2과장 - 2011.9~2012.7 대검 중앙수사1과장 - 2012.7~201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 - 2013.4~2014.1 여주지청장 - 2014.1~2016.1 대구고검 - 2016.1~2016.12 대전고검 - 2016.12~2017.5 국정농단 특검 - 2017.5~2019.7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2019.7~2021.3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2 부산지검 - 2004.2 김천지청 - 2006.2 서울중앙지검 - 2009.2 창원지검 - 2010.8 대검 검찰연구관 직대 - 2012.2 대검 연구관 - 2012.7 서울북부지검 - 2014.8 대구지검 - 2016.1 서울중앙지검 - 2018.2 안양지청 - 2019.2 남원지청 지청장 - 2019.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 - 2019.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 - 2020.02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 2021.06 포항지청 지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농단 특검 파견 -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 - 대장등 개발 의혹 수사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2019)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6)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2017)